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352-01



■ 정책보고서 2014-42

##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정은희 · 강신욱 · 박세경 · 김정현 · 강지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둘째자녀 출산계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독(2012)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저(2013)

**【공동연구진】**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발간사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가가 관리하는 360개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를 권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증대되는 복지욕구와 더불어 복지관련 사업들이 증가하였으나 이들 사업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중앙정부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기획,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포괄보조금방식은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 발굴로 인한 새로운 사업발굴과 같은 사업조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한 사업들을 조정하는 방안으로써 포괄보조금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가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조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자료정리 및 연구행정에 도움을 준 최수정 연구인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본 보고서의 견해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4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 목 차

요 약 .....	1
<b>제1장 서 론 .....</b>	<b>1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16
<b>제2장 복지사업의 분포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를 위한 일차대상추출 ..</b>	<b>17</b>
제1절 복지사업의 분포 실태 .....	19
제2절 분석 대상 사업의 추출과 유형화 .....	23
<b>제3장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b>	<b>31</b>
제1절 국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	34
제2절 미국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	48
제3절 국내외 포괄보조사업의 성과와 한계 .....	64
<b>제4장 포괄보조사업군 유형화 기준 및 평가 .....</b>	<b>67</b>
제1절 포괄보조금의 개념 및 특성 .....	69
제2절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 적격성 평가기준 .....	70
제3절 포괄보조금방식 적절성 평가틀을 이용한 사업군 도출(안) .....	75
<b>제5장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 .....</b>	<b>95</b>
<b>참고문헌 .....</b>	<b>105</b>

---

<b>부 록</b> .....	<b>107</b>
1. 포괄보조금 검토 대상 사업 .....	107
2. 미국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사전 지출보고서 양식 .....	119
2-1. 미국 SSBG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계획 .....	120
3. 미국 SSBG 사후지출보고서 예시(아리조나주) .....	121
3-1. DIS Add/Edit 설명서 .....	122
3-1-1. IDIS 세부사항 설정 (set up detail) 설명서 .....	123
3-1-2. IDIS 세부사항 설정 (set up detail) 설명서 .....	124
3-2. IDIS 세부성과(accomplishment detail) 설명서 .....	125

## 표 목차

〈표 2- 1〉 복지사업 data set의 구조와 주요 변수 .....	20
〈표 2- 2〉 복지사업의 분포(분야, 부문, 부처별) .....	21
〈표 2- 3〉 복지사업의 분포(회계, 대상, 기능별) .....	22
〈표 2- 4〉 복지사업의 분포(제도, 급여유형, 대상단위 별) .....	23
〈표 2- 5〉 분석대상 제외 사업(1차) .....	25
〈표 2- 6〉 1차 검토 대상 사업의 대상별, 기능별 분포 .....	26
〈표 2- 7〉 분석대상 제외 사업(2차) .....	28
〈표 3- 1〉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 현황(2013년 기준) .....	40
〈표 3- 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별 특성 .....	43
〈표 3- 3〉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비교 .....	45
〈표 3- 4〉 미연방 포괄보조금 사업 현황(FY2014) .....	49
〈표 3- 5〉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 지원 대상 서비스 목록 .....	52
〈표 3- 6〉 미국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	56
〈표 3- 7〉 지역개발포괄보조금 사업의 범주 .....	60
〈표 4- 1〉 국가보조금제도의 분류와 특성 .....	69
〈표 4- 2〉 독거노인종합지원 사업 내용 및 특성 .....	76
〈표 4- 3〉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지원”사업 내용과 특성 .....	79
〈표 4- 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대상사업 추가) 내용과 특성 .....	81
〈표 4- 5〉 일자리제공사업 내용과 특성 .....	83
〈표 4- 6〉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방송 지원 내용과 특성 .....	84
〈표 4- 7〉 아동언어지원서비스 내용과 특성 .....	85
〈표 4- 8〉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내용과 특성 .....	87
〈표 4- 9〉 청소년 대상 역량강화 지원 내용과 특성 .....	88
〈표 4-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과 특성 .....	89
〈표 4-11〉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내용과 특성 .....	90
〈표 4-12〉 주거약자시설개선지원 내용과 특성 .....	92

---

## 그림 목차

[그림 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성 .....	38
[그림 3-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목표와 정책방향 .....	39
[그림 3-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vs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41
[그림 3-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vs 지역발전특별회계 .....	42
[그림 3-5] 미국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운영 흐름 .....	51
[그림 3-6] HDU CPD 결과물(outcome) 측정 틀 .....	62
[그림 3-7] 미국 지역사회개발포괄보조금(CDBG) 이행 과정 .....	6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관리 사회보장사업은 360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복지와 관련된 사업간 유사중복으로 제기된 예산 및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괄보조금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음.
- 포괄보조금 방식은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발굴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는 포괄보조금 방식의 도입 적절성 평가틀을 제안하고, 평가틀을 통해 복지사업을 평가하여,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군 도출이 목적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복지관련 사업의 실태 분석을 통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정보 제공 및 사업유형화를 제안함.
  - 둘째,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괄보조금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론적·논리적인 틀을 제시함.
  - 셋째, 제시된 적절성 평가틀을 이용하여 복지관련 사업을 평가하여 포괄보조금방식 적용이 가능한 사업군을 도출하여 제시함.

## 2. 복지사업의 분포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를 위한 일차 대상 추출

- 2장은 현재 시행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할 잠재적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각 사업의 특성을 설명하는 객관적 정보 위주로 검토함.
  - 그러나 실제 사업 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 장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 적합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주요 변수별로 각 사업의 분포는 <표 2-2>부터 <표 2-4>에 제시되어 있음.
  - <표 2-2>는 복지사업의 분야, 부문, 부처별 분포를, <표 2-3>은 재원, 대상, 기능별 분포를, <표 2-4>는 제도, 급여유형, 대상 단위별 분포를 보여줌.
  
- 각 사업의 객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 대상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출함.
  - 사업부문이 기초보장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민 생활의 기본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38개).
  - 사업 기능이 소득보장이면서 급여 유형이 현금 급여인 사업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7개).
  - 사회보험 사업의 경우 대부분 기여에 근거한 권리성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방식 변형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23개).
  - 그밖에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달하여 보조금 사업이 아닌 경우(4개)와 조세지출 사업(3개),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원분담 대상이 아닌 에너지특별회계 사업(5개)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나머지 278개 사업에 대해 대상과 기능이 동일한 사업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분류한 결과 65개의 사업군을 도출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2차로 검토대상을 추출함.
  - 사업군에 속하는 사업의 수가 1개인 경우, '포괄'보조의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함(24개 사업).
  - 통일부와 국가보훈처의 사업처럼 부처의 사업이 특정 대상에 집중된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2개 부처 44개 사업).
  - 이상과 같은 이유로 2차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68개임.
-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150(82 + 68)개의 사업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총 35개의 사업군에 대해 210개의 사업이 검토 대상으로 추출되었음.
  - 이들 사업들에 대해 사업군(대상 및 기능을 적용하여 분류)별로 재원, 제도, 급여유형, 담당부처, 지원단위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포괄보조금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함.
  - 검토 대상 사업군은 <부록 1>에 상세히 제시함.

### 3.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 본 장에서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성과 향상과 재정 관리 개선의 측면에서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복지사업의 성과 관리적 측면에서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는 제도 목적에 따라 3가지의 관점으로 구분이 가능함.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운영의 집권화 또는 분권화
    - 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균형과 불균형의 형평성
    - 성과주의와 성과계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집행재량과 결과책임의 연계

#### 4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에 관한 기존 입장은 찬반이 엇갈림.
  - 재정분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은 재원의 집행 단위의 재량을 확대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현실화(축소)하고,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 관리의 효율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내실화 노력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점진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축소와 재량의 축소와 범주화의 문제, 중앙정부의 책임회피와 추가적 행정업무 발생에 따른 행정효율화에 대해 회의적 문제를 제기함.
- 현재 국내에도 포괄보조금 지원제도가 운영 중임.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5개 시도담당자 FGI 결과 사업의 중복조정 및 사각지대 발굴 등과 같은 사업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사업의 기획능력과 조정능력이 개선되었음.
  - 지자체 단위에서 세 개의 내역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 사업조정 및 관리가 더 용이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반대로 세 개의 내역사업이 각각 운영되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있는 경우 사업의 운영 및 조정에 있어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임.
    - 기존의 개별보조금 방식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음. 다른 두 사업과 집행체계가 달라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어 사업조정이 더욱 제한적임.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사업간 칸막이가 없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설계가 가능함.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시군구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업의 전달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음.
  - 990억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고 지자체단위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어 사업운영 및 조정이 용이함.

- 국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 미국의 경우, 포괄보조금이 지원되는 주요 분야는 지역사회 개발, 사회서비스 공공의료 및 법률 규정에 따름.
  - 미국 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옹호의 입장에서는 분권화, 의사결정 권한의 부분적 지방이양 등을 통해 사업운영의 권한과 책무성을 분산시킴으로써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사업효과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함.
  - 반면 연방정부의 국가 목표 달성을 약화시키거나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부 지출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함.
- 국내외 사회서비스 부문 주요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검토한 바,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상의 쟁점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포괄보조금 방식의 단계적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포괄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수준의 재량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으나, 지자체의 집행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사업단위로 관련 단위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규모를 줄이게 되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축소될 수 있으나, 포괄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업에 따라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자체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재원분담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과관리가 관건으로 대두됨.
- 미국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과 지역사회개발포괄보조금(CDBG) 운영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확장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심층적으로 검토해볼 의의가 있는 특이점과 한계를 제시함.
  - 미국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음.
    - 주정부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보장함으로써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함.

## 6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SSBG의 경우 사전 지출계획 및 사후지출 보고의 형식에 있어서 강제성은 없지만,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하여 운영관리 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 SSBG 지원사업 자체의 사업적 성과 향상을 위해 장단기 혹은 연간 수행 평가 지침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TANF 기금 중 10%를 SSBG 프로그램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여 주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CDBG는 Entitlement CDBG와 State SSBG로 나누어 지역사회규모에 따라 기금 유용 형태를 달리 하여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IDIS, CAPER, PER 등을 이용해 SSBG보다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갖추.
- SSBG와 CDBG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는 향후 제도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 Budget)의 SSBG 기금 평가 항목들과 HUD의 CDBG 결과 측정 틀은 프로그램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일부 평가 항목들은 중복됨.
  - 특히 SSBG는 사전·사후 지출보고 이외의 주정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평가 체계가 전무하며, 일부 제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주정부 혹은 일부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단편적, 즉흥적으로 실시되므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임.
  - SSBG와 CDBG 평가의 주된 목표는 행정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예산 절약측면으로 포괄보조금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도는 극히 제한적임.
  - TANF 기금의 일부를 SSBG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 사회보장·복지라는 하나의 한정된 자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변경으로 전체 사회복지 대상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질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국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확대에 있어 미국의 SSBG와 CDBG 운영 경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및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고, 중앙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와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라 판단됨.

- 지방 정부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복지부문 적용에 앞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관계 규명과 역할분담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또한 지자체 사업담당자, 예산운용자, 조직관리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정착 노력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 특히 단순히 예산의 집행·관리 차원을 넘어서 사업수행 측면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력관계 설정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사료됨.

#### 4. 포괄보조사업군 유형화 기준 및 평가

□ 본 장에서는 복지사업의 포괄보조금 방식의 전환 적절성 평가틀을 제시하여 각 사업의 포괄보조금 방식의 전환 적절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포괄보조사업군을 도출한 후 유형화(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 포괄보조금방식 적절성 평가틀은 다음과 같음.

○ 대상자와 기능의 유사성/보완성을 검토함.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의 목표와 기능의 유사성/보완성

○ 지자체의 자율성을 검토함.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에서 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공통 성과지표 활용가능성을 검토함.

- 성과지표가 유사한지 여부

○ 사업규모를 검토함.

- 예산 규모 검토

□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업은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으로 부적합한 사업임.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간 사업이나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지방정부의

## 8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예) 공공임대주택공급, 장기전세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영구임대주택공급 등

○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할 필요가 없음.

- 예) 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군은 현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도 제외함.

- 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자체의 사업운영 자율성이 제한적인 사업은 제외함.

- 사업집행체계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민간기관에 100% 지원되는 사업
- 국고보조율이 100% 이며, 중앙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 대상자선정 및 지원수준 및 규모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운영되거나, 전국단위의 표준화가 필요한 사업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급여내용과 수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업운영상의 지역 자율성이 낮음.
- 예)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분야 사업, 장기요양과 관련된 급여, 건강/의료분야 사업군 중 의료비 지원 사업,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및 유아학비 지원 사업 등

○ 사업집행체계가 상이하여 지자체단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포괄보조금 방식 대상 사업군에서 제외시킴.

□ 포괄보조금방식 사업군 추출 원칙

○ 동일한 대상 집단의 사업을 블록화

- 다양한 대상 집단의 사업을 한 유형으로 블록화하는 경우, 대상자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사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취약한 대상 집단의 사업이 축소되어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일차적으로 추출한 210개의 사업 중 포괄보조금 방식의 사업군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과 기능/목적/집행체계가 상이한 사업, 지역의 자율성이 제한적인 사업 176개를 제외한 34개 사업과, 2장에서 자동 탈락된 사업 2개를 포함한 총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11개 포괄보조금 방식의 사업군으로 유형화함.

○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 부적합 사유 및 제외 리스트는 <부록 1>에 제시함.

□ 포괄보조방식 대상사업 사업군 추출 결과(안)

포괄보조 사업군명	대상사업	
1. 독거노인 종합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미사업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운영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지원
2.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지원"	고령층정보화교육 온라인정보화교육 장애인정보화교육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sup>1)</sup>
3.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대상 사업 추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전립선등노인성질환예방관리	노인틀니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4. 일자리제공사업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5.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보급	통신중계서비스
6. 아동언어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7.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8. 청소년 대상 역량강화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활동지원 17개시도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지원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10.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공공산림가꾸기	
11. 주거약자시설개선 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주거환경개선자금 주거약자개량자금지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 사회취약계층 실내 환경 진단개선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sup>2)</sup>	

주: 1)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사업은 1차 추출대상 210개 사업 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일부처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기능상 유사사업으로 분류되어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군으로 포괄하였음.

2)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2장에서 추출한 210개 사업군에서 제외되었으나, 기능상 유사한 사업으로 본 사업군에 포함하였음.

## 5.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

- 포괄보조금방식의 도입은 예산지원방식의 변경을 넘어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역할변화와 관련된 행정관리 및 평가기법의 개발을 필요로 함.
- 사업성과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책임분담 및 역할의 개편이 필요함.
  - 중앙정부는 지방의 복지계획을 심사·평가, 전략목표 설정, 사업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방식으로 분권화가 필요함.
- 지역별, 사업군별 포괄보조금 예산책정을 위한 재원배분 방식의 개발이 필요함.
  - 투명하고 객관적인 예산배분을 위해 예산배정 산식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함.
  - 예산배정금액의 추정을 통한 사업운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기여함.
  - 재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재정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편성하여 적어도 예산총액수준을 최소한 현재와 같이 유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기획 및 운영, 평가능력의 개발이 필요함.
  - 지자체의 과도한 사업운영 부담 감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 대상 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개편이 필요함.
  -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개편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법·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비 부담방식, 보조금 지불정산,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성과관리, 인센티브 및 벌칙에 대한 규정 도입이 필요함.
- 사업 운영 3년 후 사업 성과평가 실시 후 포괄보조금방식 확대 점검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전환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제도자체의 문제인지, 제도설계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재원의 문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평가가 필요함.

\*주요용어: 포괄보조금, 개별보조금, 사회보장사업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가관리 사회보장사업은 360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유사중복성은 복지관련 사업이 유사(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동일)한 대상에게 유사(동일)한 프로그램을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 복지사업의 유사중복성은 사업 및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슈임.
    -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사업간 유사성 검토 및 예산의 중복방지를 권고함.
- 복지와 관련된 사업간 유사중복으로 제기된 예산 및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괄보조금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음.
  -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이란,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들 중 유사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블록화 하여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블록화된 대상 사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 유형임.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포괄보조금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함.
- 포괄보조방식은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발굴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함.
- 먼저, 기존의 보조금 사업들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복지사업들의 실태 및 특성 분석이 필요함.

#### 14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사업특성 분석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정보를 제공할 것임.
- 다음으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함.
  -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포괄보조금 방식의 적절성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함.
  -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 중인 국내외 사례를 통해, 기존의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포괄보조금방식 도입 적절성 평가틀을 통해 복지사업을 평가하여,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사업군을 도출하고자 함.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복지관련 사업의 실태 분석을 통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정보 제공 및 사업유형화를 제안함.
  - 둘째,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괄보조금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틀을 제시하고자 함.
  - 셋째, 제시된 적절성 평가틀을 이용하여 복지관련 사업을 평가하여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군을 도출하여 제시함.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됨.
  - 1장은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내용에 대해 기술함.
  - 2장은 현재 시행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할 잠재적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살펴봄. 사업의 특성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360개의 복지사업에 대한 data set을 구축함.
  - 3장에서는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국내외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현황분석을 통해 운영·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포괄보조금 방식의 복지분야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함의를 제시함.
  - 4장에서는 복지사업의 포괄보조금 방식의 전환 적절성 평가틀을 제시하여 각 사업에 대하여 포괄보조금 방식의 전환 적절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대상 사업군을 도출하여 유형화(안)을 제시함.
- 포괄보조금방식으로의 전환은 예산지원방식의 변경을 넘어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변화와 관련된 행정관리 및 평가기법의 개발을 필요로 함. 따라서 5장에서는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전환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선행과제를 제시함.

### 2. 연구방법

- 복지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방식의 전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포괄보조금 방식과 관련된 논문, 정책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학술자료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함.
- 국가보조금 복지사업의 실태 및 사업특성 분석을 위해 정부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복지사업의 대상자 및 기능별 유형화를 시도함.
  - 분석에 사용된 사업현황 자료는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포괄보조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식, 기존 포괄보조 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 및 한계 등을 조사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함.
- 지방재정, 사회서비스 및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분야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연구방향 및 결과분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복지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포괄보조금 방식의 도입 적합성을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포괄보조금 방식을 둘러싼 쟁점 분석을 통해 포괄보조금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함.
  - 유사중복과 사각지대 조정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함.
- 포괄보조금 방식의 복지사업 분야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함.
  -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 후 적용 가능한 복지사업(군)을 제시함.
  - 제시된 복지사업(군)을 토대로 향후 포괄보조금 방식의 도입 등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함.



## 제2장

# 복지사업의 분포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를 위한 일차대상추출

제1절 복지사업의 분포 실태

제2절 분석 대상 사업의 추출과 유형화



# 2

## 복지사업의 분포와 포괄보조금 <<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를 위한 일차대상추출

### 제1절 복지사업의 분포 실태

- 이 장은 현재 시행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할 잠재적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현행 사업들의 주요 특성들을 중심으로 복지사업의 실태를 살펴봄.
  - 각 사업의 특성을 설명하는 객관적 정보는 사업조정을 위한 다양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의 대상, 기능, 재원조달 방식, 시행 부처 등과 관련된 정보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사업들과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여 줄 것임.
  - 그러나 객관적 정보는 사업 조정의 필요조건을 제공할 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사업 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특성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장에서 도출되는 사업목록은 일차적 검토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 장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 적합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먼저, 현재 시행중인 주요 복지사업의 특성과 분포를 검토할 것임.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360개의 복지사업에 대한 data set을 구축함.
  - 이 data set은 각 사업별 기본 정보와, 이를 근거로 도출한 정보 등 사업 조정에 필요한 정보 등을 포함함.
    - data set에 포함된 주요 정보(변수)들은 아래의 <표 2-1>과 같음.

20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표 2-1〉 복지사업 data set의 구조와 주요 변수

변수명	구분	구분 근거
분야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외교통일,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기타(국세감면 등)	국가재정법
부문	재정·금융, 정부자원관리, 법무 및 검찰, 경찰, 재난관리, 외교통일,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문화예술, 관광, 상하수도·수질, 환경일반,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농업농촌, 임업산촌, 수산어촌, 식품업,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해운항만, 지역 및 도시, 기타(예, 조세지출)	국가재정법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sup>1)</sup>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재원(회계)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립재활원, 석면피해구제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훈기금, 국민주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국민연금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성발전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응급의료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방재정, 조세지출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대상	고령자/노인, 영유아/아동/청소년/(대학생), 여성/가족,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산재근로자, 다문화/북한이탈주민/외국인, 농어업인/농어촌 거주자, 특수대상 및 기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국가사업 분류
대상 (상세구분)	고령자/노인,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대학생, 저소득, 취약가족, 여성, 장애인, 보훈대상자, 산재근로자, 다문화/탈북/외국인, 농어업인/농어촌 거주자, 특수대상 및 기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국가사업 분류
기능	소득보장, 건강/의료지원, 출산/보육(입양), 성인돌봄, 교육/문화지원, 자립/재활/치료지원, 자활/고용지원, 역량강화/사회참여지원, 보호/안전/법률지원, 주거/에너지/교통지원, 정보통신/방송지원, 보상/위로금, 조세감면, 특별지원 및 기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국가사업 분류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기타(어선재해보상보험, 풍수해보험료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험지원 등)	
급여유형	현금, 감면, 조세지출, 용자(대부, 대출), 현물, 서비스, 현금&현물	
사업 단위	개인, 가구, 시설 및 단체(기관), 기타	

1) 국회예산정책처(2012)에는 ‘안전행정부’로 제시되어 있으나 조직개편(2014.11.19.)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행정자치부’)을 적용함.

□ 주요 변수별로 각 사업의 분포는 다음과 같음.

○ <표 2-1>의 구분에 근거하여, <표 2-2>는 복지사업의 분야, 부문, 부처별 분포를, <표 2-3>은 재원, 대상, 기능별 분포를, <표 2-4>는 제도, 급여유형, 대상 단위별 분포를 보여줌.

<표 2-2> 복지사업의 분포(분야, 부문, 부처별)

(단위: 개, %)

분야	빈도	비율	부문	빈도	비율	부처	빈도	비율
일반공공행정	11	3.1	재정금융	4	1.1	기획재정부	2	0.6
공공질서및 안전	7	1.9	정부자원관리	7	1.9	미래창조과학부	9	2.5
외교통일	10	2.8	법무및 검찰	6	1.7	통일부	10	2.8
교육	22	6.1	재난관리	1	0.3	법무부	2	0.6
문화및 관광	7	1.9	외교통일	10	2.8	행정자치부	2	0.6
환경	4	1.1	유아초중등교육	11	3.1	문화체육관광부	5	1.4
사회복지	<b>244</b>	<b>67.8</b>	고등교육	7	1.9	산업통상자원부	6	1.7
보건	24	6.7	문화예술	8	2.2	<b>보건복지부</b>	<b>138</b>	<b>38.3</b>
농림수산	12	3.3	관광	1	0.3	환경부	4	1.1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4	3.9	상하수도·수질	1	0.3	고용노동부	36	10.0
교통 및 물류	1	0.3	환경일반	3	0.8	여성가족부	44	12.2
국토, 지역개발	1	0.3	기초생활보장	40	11.1	국토교통부	14	3.9
해당 없음	3	0.8	<b>취약계층지원</b>	<b>43</b>	<b>11.9</b>	해양수산부	2	0.6
			공적연금	2	0.6	국가보훈처	37	10.3
			보육가족여성	39	10.8	방송통신위원회	3	0.8
			노인청소년	29	8.1	금융위원회	4	1.1
			노동	36	10.0	경찰청	1	0.3
			보훈	37	10.3	소방방재청	1	0.3
			주택	13	3.6	산림청	3	0.8
			사회복지일반	4	1.1	중소기업청	8	2.2
			보건의료	23	6.4	교육부	21	5.8
			농업농촌	7	1.9	농림축산식품부	8	2.2
			임업산촌	3	0.8			
			수산업촌	1	0.3			
			식품업	1	0.3			
			산업진흥고도화	8	2.2			
			에너지자원개발	6	1.7			
			해운항만	1	0.3			
			지역 및 도시	1	0.3			
			해당없음	7	1.9			
계	360	100.0	계	360	100.0	계	360	100.0

주: 굵은 글씨는 각 구분 내에서 빈도가 가장 큰 항목을 나타냄.

22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표 2-3〉 복지사업의 분포(회계, 대상, 기능별)

(단위: 개, %)

회계구분	빈도	비율	대상	빈도	비율	기능	빈도	비율
<b>일반회계</b>	<b>213</b>	<b>59.2</b>	고령자/노인	32	8.9	소득보장	41	1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	3.1	영유아	26	7.2	건강/의료지원	45	12.5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5	1.4	아동/청소년	32	8.9	출산/보육	28	7.8
환경개선특별회계	3	0.8	대학생	7	1.9	성인돌봄	13	3.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	0.3	<b>저소득</b>	<b>88</b>	<b>24.4</b>	교육/문화지원	32	8.9
국립재활원	1	0.3	취약가족	23	6.4	자립/재활/치료	17	4.7
석면피해구제기금	1	0.3	여성	12	3.3	<b>자활/고용지원</b>	<b>53</b>	<b>14.7</b>
에너지자원특별회계	3	0.8	장애인	53	14.7	역량강화/사회참여	25	6.9
특별회계 소계	21	5.8	보훈대상자	37	10.3	보호/안전/법률	25	6.9
보훈기금	8	2.2	산재근로자	9	2.5	주거/에너지/교통	30	8.3
국민주택기금	12	3.3	다문화/탈북/외국인	19	5.3	정보/통신	12	3.3
산재보험예방기금	10	2.8	농어업/농어촌	9	2.5	보상/위로금	16	4.4
국민연금기금	2	0.6	특수 및 기타	13	3.6	조세감면	3	0.8
청소년육성기금	13	3.6				기타	20	5.6
장애인고용촉진기금	7	1.9						
고용보험기금	11	3.1						
국민건강증진기금	24	6.7						
여성발전기금	10	2.8						
근로복지진흥기금	2	0.6						
방송통신발전기금	4	1.1						
전력산업기반기금	1	0.3						
응급의료기금	1	0.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	0.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	1.7						
중소기업진흥기금	1	0.3						
기금사업 소계	119	33.1						
지방재정	4	1.1						
조세지출	3	0.8						
기타 소계	7	1.9						
계	360	100.0	계	360	100.0	계	360	100.0

주: 굵은 글씨는 각 구분 내에서 빈도가 가장 큰 항목을 나타냄.

〈표 2-4〉 복지사업의 분포(제도, 급여유형, 대상단위 별)

(단위: 개, %)

제도	빈도	비율	급여유형	빈도	비율	대상 단위	빈도	비율
사회보험	23	6.4	현금	94	26.1	<b>개인</b>	<b>164</b>	<b>45.6</b>
공공부조	111	30.8	감면	33	9.2	가구	124	34.4
<b>사회서비스</b>	<b>219</b>	<b>60.8</b>	조세지출	3	0.8	시설 및 기관	62	17.2
기타	7	1.9	용자/대부	16	4.4	기타(복합)	10	2.8
			현물	35	9.7			
			<b>서비스</b>	<b>178</b>	<b>49.4</b>			
			현금+현물	1	0.3			
계	360	100.0	계	360	100.0	계	360	100.0

주: 굵은 글씨는 각 구분 내에서 빈도가 가장 큰 항목을 나타냄.

## 제2절 분석 대상 사업의 추출과 유형화

- 각 사업의 객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 대상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출이 가능함.
- 분석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사업들의 범주와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검토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부문이 기초보장에 해당되는 사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기초보장 사업은 대부분 국민 생활의 기본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40개의 사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기능이 소득보장이면서 급여 유형이 현금급여인 사업을 제외함.
    - 기초보장 부문이 아니면서 소득보장 기능에 해당되는 사업은 주요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보장제도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기초보장제도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가급여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현금급여의 보장성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함.
  - 기초보장부문 이외에 소득보장 기능을 지니면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7개 사업을 추가로 제외함.
- 사회보험 사업의 경우 대부분 기여에 근거한 권리성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방식 변형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제도 유형은 사회보험으로 분류되나 재원이 사회보험 관련 기금이 아닌 다른 재원(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타 기금)에서 조달되는 사업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시킴.
  - 결과적으로 사회보험 사업 가운데 재원을 국민연금기금, 산재보상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조달하는 23개 사업을 추가로 제외함.
- 그밖에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달하여 보조금 사업이 아닌 경우(4개)와 조세지출 사업(3개), 그리고 지방의 재원분담 대상이 아닌 에너지특별회계 사업(5개)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이상과 같이 분석의 대상에서 일차적으로 제외된 사업들은 총 82개이며, 그 목록은 다음 <표 2-5>와 같음.

〈표 2-5〉 분석대상 제외 사업(1차)

구분	해당 사업		사업 수
부문 =기초보장	(기초생활)교육급여 (기초생활)생계급여 (기초생활)장제급여 (기초생활)주거급여 (기초생활)주거현물급여 (기초생활)해산급여 (긴급지원)교육지원 (긴급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긴급지원)생계지원 (긴급지원)연료비및전기요금 (긴급지원)의료지원 (긴급지원)장제비지원 (긴급지원)주거지원 (긴급지원)해산비지원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저소득층생업자금 지역자활센터운영 희망리본사업 희망키움통장	(의료급여)노인틀니(노인의치보철) 의료급여 의료급여본인부담보상금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대불금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지원 의료급여중증희귀난치성환자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장애인보장구급여 장애인의료비 양곡할인 내일행복지원단	40개
기능 =소득보장 제도 =공공부조	기초연금 <sup>2)</sup>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7개
제도 =사회보험 & 재원 =사회보험기금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이상 국민연금기금) (산재)요양급여(보조기) 산재근로자대학학자금융자 산재근로자복지사업(장학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창업접포지원 (이상 산재보상기금)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 고령자다수고용지원 임금피크제지원금 정년연장지원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 출산육아기고용지원및대체인력지원금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지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취약계층전담취업지원사업 (이상 고용보험기금)	23개
재원 =지자체 사업	고교학비지원(시도교육청), 급식비지원(시도교육청) 방과후자유수강권(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		4개
재원 =조세지출, 에너지특별회계	근로장려금, 국세감면, 지방세감면(이상 조세지출), 국가유공자 LPG차량세인상분지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연탄현물보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진폐근로자보호(이상 에너지특별회계)		8개
계			82개

2)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서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기초연금으로 변경(2014/7/1)됨.

26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위 82개를 제외한 분석 대상 278개 사업에 대해 기능과 대상을 기준으로 교차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 2-6>과 같음.

○ 대상과 기능이 동일한 사업군은 사업 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될 수 있음.

- 복지사업의 대상구분은 표적화(targeting)의 취지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구분이 아닌 상세 구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표 2-6> 1차 검토 대상 사업의 대상별, 기능별 분포

기능 대상	소득 보장	건강 / 의료	출산 / 보육	성인 돌봄	교육 / 문화	자립 / 재활 / 치료	자활 / 고용	역량 강화 / 사회 참여	보호 / 안전 / 법률	주거 / 에너지 / 교통	정보 / 통신	보상 / 위로금	특별 지원 / 기타	합계
고령자 / 노인	0	4	0	10	1	0	2	3	0	1	3	0	0	24
영유아	0	7	19	0	0	0	0	0	0	0	0	0	0	26
아동/ 청소년	0	2	1	0	5	1	0	4	15	0	0	0	0	28
대학생	0	0	0	0	7	0	0	0	0	0	0	0	0	7
저소득	3	5	0	1	1	0	9	1	0	20	1	0	1	42
취약 가족	0	2	3	0	2	1	0	5	2	0	1	0	0	16
여성	0	0	0	0	0	0	5	0	7	0	0	0	0	12
장애인	0	3	2	0	5	12	11	7	0	1	5	0	0	46
보훈 대상자	2	8	0	1	4	0	4	0	1	1	0	15	0	36
다문화 /탈북/ 외국인	0	0	1	0	2	0	1	5	0	0	1	0	8	18
농업/ 농어촌	1	1	1	1	0	0	0	0	0	2	0	0	2	8
특수/ 기타	0	5	0	0	0	0	0	0	0	1	0	1	8	15
합계	6	37	27	13	27	14	32	25	25	26	11	16	19	278

□ 이상의 278개 사업에 대해 대상과 기능이 동일한 사업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분류한 결과 66개의 사업군을 도출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2차로 검토대상을 추출함.

○ 사업군에 속하는 사업의 수가 1개인 경우 포괄보조 대상에서 제외함(24개 사업).

- 사업대상과 기능의 동일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 간에도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 통일부와 국가보훈처의 사업처럼 부처의 사업이 특정 대상에 집중된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2개 부처 44개 사업).

- 통일부의 사업은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집중되었으며, 국가보훈처 사업은 전수가 보훈대상자로 분류된 대상군에 집중됨.

- 특정 부처의 사업이 특정 대상군에 집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대상자의 규모가 타 사업에 비해 소수이고 지원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배경 목적, 욕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 부처 내에서 일차적 조정을 거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사업의 수를 조정하는 방안, (북한이탈주민이나 보훈대상자 등을) 타 부처 사업의 수급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임.

○ 이상과 같은 이유로 2차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68개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2-7>과 같음.

28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표 2-7〉 분석대상 제외 사업(2차)

구분	해당 사업	사업 수
사업군내 사업수 = 1개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초등돌봄교실 디딤씨앗통장 가시간병도우미사업(바우처) 문화통합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랑의그린PC 풍수해보험료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웹정보접근성제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가유공자등) 양로보호 중장기복무제대군인법률구조지원 다문화아동보육료지원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신소의계층정보화교육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사업 취약농어가인력지원 (영농도우미,가사도우미지원) 개발제한구역거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24개
부처 사업이 특정 집단에 집중된 사업	(북한이탈주민)교육비지원 (탈북학생)교육지원(계)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 (북한이탈주민)상담지원 (북한이탈주민)생활안정지원(소계)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소계)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원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지원 (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 남북피해자지원 (이상 통일부 10개)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제대군인대부지원 (국가유공자등)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고엽제특별지원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보훈병원진료 보훈요양원이용본인부담금지원 위탁병원진료 국가보훈대상자및자녀보훈장학금지급 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국가보훈대상자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민영교통시설이용 (버스, 내항여객선, KTX 등) (국가유공자등)단순수급권자생계부조비 (국가유공자등)보상금 (국가유공자등)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등)손자녀가계지원비 (국가유공자등)영주귀국정착금 (국가유공자등)재해보상금 (국가유공자등)재해위로금지급 6.25자녀수당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유공자등 간호수당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참전명예수당 (이상 국가보훈처 사업 35개)	44개
	계	68개

-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150(82 + 68)개의 사업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총 35개의 사업군에 대해 210개의 사업이 검토 대상으로 추출되었음.
- 이들 사업들에 대해 사업군(대상 및 기능을 적용하여 분류)별로 재원, 제도, 급여유형, 담당부처, 지원 단위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함.
- 검토 대상 사업군은 <부록 1>에서 상세히 제시함.





## 제3장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제1절 국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제2절 미국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제3절 국내외 포괄보조사업의 성과와 한계



# 3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

- 본 장에서는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국내외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현황분석을 통해 운영·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포괄보조금 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함.
- 복지재정의 확대에 따라 자율적인 재정운영과 책임 있는 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바, 사회서비스 부문의 성과 향상과 재정 관리 개선의 측면에서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도록 함.
- 본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절에서는 국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법·제도적 배경을 개괄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살펴보았음.
  - 제2절에서는 미국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과정의 특징을 고찰하였음.
  - 제3절 소결에서는 국내외 사회서비스 부문 주요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부문 포괄보조금 방식의 확대에 따른 쟁점과 논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전과 정책집행의 포괄성 및 재원배분의 재량과 자율성을 주요 가치로 지향하고 있음.
- “포괄보조는 보조금을 받는 정부의 재량권 하에 있는 광범위한 기능적 영역에서 성문법적 공식에 따라 주로 일반정부 단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기금”임 (Waller, 2005: 이정희·박경돈 2010에서 재인용).
- 지출용도에 특별한 제한 없이 당초 사업목적에 따른 일반 재원으로 이용되는 일반 포괄보조금과 조건부 포괄보조금으로 구분됨.

- 조건부 포괄보조금은 다시 그 재원활용의 목적을 제한하는 수준에 따라 완전 조건부, 제한적 조건부, 일반조건부 등으로 분류 가능함.
- 한편 재원배분 방식을 적용한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는 과거의 지출정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현재의 재정수요 기준을 적용한 포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윤영진·이재원, 2006).
  - 과거지출 정보를 적용하는 경우, 과거지출 평균을 반영하거나 과거 지출 증감률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때 물가상승분의 반영여부가 쟁점이 됨.
  - 재정수요 기준에 따라서 미래 기준의 잠재재정 수요를 산정할 수도 있음.

## 제1절 국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복지관련 사업의 확대에 따른 복지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개편과 지자체 복지 분야의 재정적 재량의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책과 복지재정 분권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함.
- 복지사업의 성과 관리 측면에서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를 검토한다면 제도 목적별 3가지의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이정화·박경돈, 2010).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운영의 집권화 또는 분권화 쟁점이 있음.
    -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의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각차이로 촉발되는데,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을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계획수립 단계에서 배제된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
    -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정책수단의 선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가치 지향적 복지서비스 형태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정책수단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이 필요함.
    -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적인 사유도 집권화와 분권화 논란의 촉발요인이 되는데, 제도적으로 국고보조금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재원이 정착될 경우 포괄보조금방식 중심의 예산집행과 재정관리가 불가능함.

- 재정낭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재원이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방이양될 경우 정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는 오히려 과도한 재정 소비와 자원낭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상 차별성을 인정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새롭게 재편할 경우 포괄보조금 지원제도가 필요함.
- 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균형과 불균형의 형평성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일반적 재정능력과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 것인가의 과제가 있음.
  -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취약한 경우,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지역사회 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서비스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음.
  - 아울러 포괄보조금 방식은 현재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으나 미래 수요나 선호, 필요를 반영하기 어려움.
  - 반면 지방정부가 사업수행방식을 효율화할 경우 불필요한 사업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집행의 시의성 제고 가능함.
- 성과주의와 성과계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집행재량과 결과책임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성과주의와 연동하는 방안으로 이때 성과주의의 핵심은 성과계약의 개념 하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재량과 결과책임을 연계하는 방안임.
  - 성과주의 재원배분의 전제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 체계 및 결정단계의 간소화, 자주재원<sup>3)</sup>과 일반재원<sup>4)</sup> 사업 강화를 위한 자율적 재정책임

의 확립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지지 입장과 반대 입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이정희·박경돈, 2010).
  - 재정분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는 재원의 집행 단위의 재량을 확대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현실화(축소)함.
  -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 관리의 효율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내실화 노력을 강조함.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점진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축소와 재량의 축소와 범주화의 문제, 중앙정부의 책임회피와 추가적 행정업무 발생에 따른 행정효율화에 대한 회의적 문제를 제기함.
  
- 국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현황을 살피기에 앞서 관련하여 분권교부세 제도와 광역특별회계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이후 5년 한시 운영예정의 분권교부세는 당초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흡수되고, 해당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전환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재원부족 논란으로 분권교부세는 5년 추가 연장됨(관련규정 개정).
  - 분권교부세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지불 정산의무가 없는 지방 일반 재원을 이용한 사업이지만,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완전한 지방이양과 중앙정부의 책임 면제가 불가능한 일종의 포괄보조사업임.
    -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포괄보조사업의 수행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 관계 형성이 기대됨.
    - 그러나 사전 제도설계 당시부터 사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적 포장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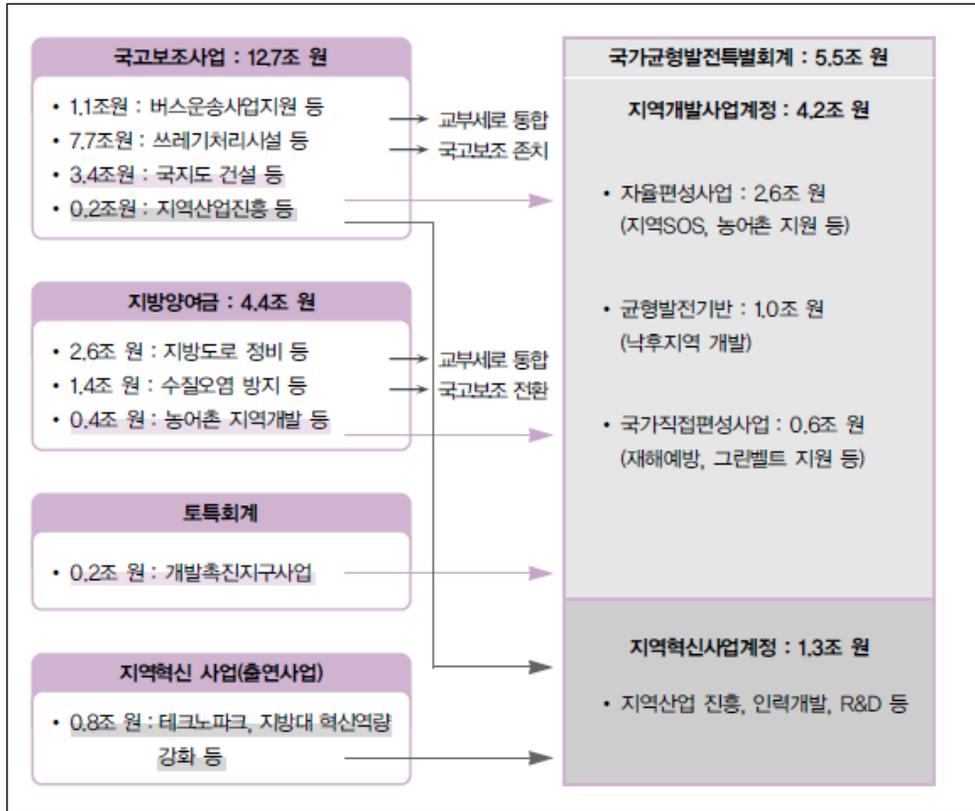
---

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며,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의존재원이 있음(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4)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리키며, 지방세, 지방재정교부금, 잡수익 등이 있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재원에 포함되지 않음(매일경제용어사전).

- 실제 분권교부세 사업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사업기획력과 재정운영의 재량을 인정하기 보다는 전국 단위로 표준화가 필요한 기초 복지 사업 상당부분이 포함됨.
  - 또는 지역 내 복지인프라 확충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한 사업도 포함됨.
  - 아울러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서 분권교부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총량적 재원규모의 안정적 확보가 관건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복지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책확충 추세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임계수준에 다다르고, 결국 포괄보조금 방식의 개선 효과가 창출되기 보다는 재원부족에 대한 비판과 복지축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우려됨.
-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9.4.22. 전면 개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역개발계정의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사실상 포괄보조금 형태의 이전재원임(김현아, 2008).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던 사업별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하고 있음.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을 보다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시킴으로서 실질적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음(이순배·백철우, 2011).

[그림 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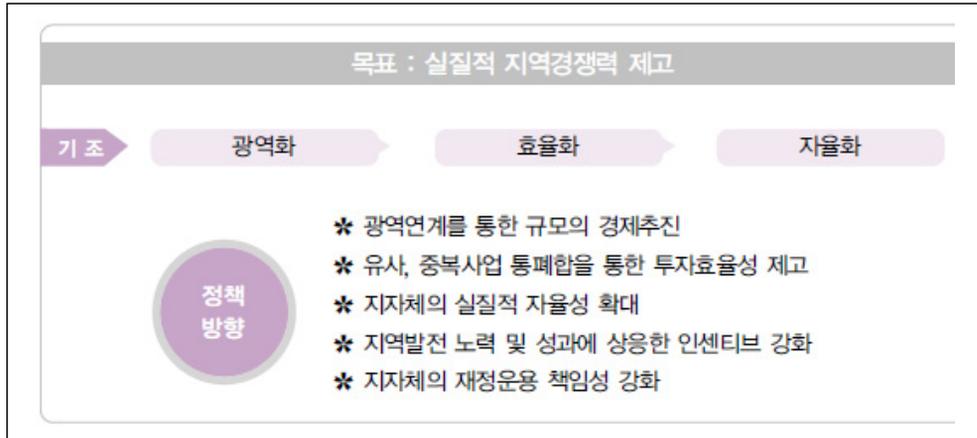


자료: 신두섭(2014)에서 재인용.

-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이 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회계, 계정 명칭의 변경과 사업재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신두섭, 2014).
  - 회계명칭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회계 계정의 구조를 기존 ‘지역개발-지역혁신-제주계정’ 틀을 유지하되, ‘지역혁신’ 계정을 ‘광역발전’으로 개편함.
  - 명시적인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지역개발사업계정의 200여 개 세부사업을 20개 내외의 포괄보조방식으로 통합하고 사업의 성격과 정책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 예산편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검토 및 의견제출 절차를 폐지함.

[그림 3-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목표와 정책방향



자료: 신두섭(2014)에서 재인용.

- 특히 재원의 한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개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으로 낙후지역의 개발 등과 관련된 4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2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함.
  -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을 선택함.

40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표 3-1〉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명	내역사업 개수	보조율 (%)	부처
시도 자율 편성 사업	1_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4	40	문화체육관광부
	2_관광자원 개발	3	50	
	3_체육진흥시설 지원	3	30	
	4_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4	50	
	5_문화유산 관광자원화	4	50	문화재청
	6_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2	50	농림축산식품부
	7_농업기반정비	4	80	
	8_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4	50	해양수산부
	9_어업기반정비	12	80	
	10_해양 및 수자원 관리	3	50	
	11_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	50	농촌진흥청
	12_산림경영자원 육성	3	80	산림청
	13_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6	50	산업통상자원부
	14_지역특성화산업 육성	19	50	
	15_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 지원	2	60	중소기업청
	16_청소년시설 확충	2	30~88	여성가족부
	17_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4	70	환경부
	18_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3	50	
	19_대중교통지원	2	90	국토교통부
	20_지역거점 조성지원	2	10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21_성장촉진지역 개발	2	10	국토교통부
	22_특수상황지역 개발	15	80	행정자치부
	23_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16	50	국토교통부
	24_일반농산어촌 개발	15	70	농림축산식품부

주: 부처명은 정부조직도(2014/11/15) 기준  
 자료: 신두섭(2014)에서 일부 수정·재인용.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회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포괄보조사업 관련 정책적 특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사업의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포괄보조사업으로 조정하여 지역별, 부처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의 수요와 사업간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적으로 세부내역을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함.

- 지역별 지출한도 배분 시,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실적과 회계운영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원배분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함.
- 집행가능성 높은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을 제고함.

[그림 3-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vs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구 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 국가균형발전 지원	•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회 계 구조	• 지역개발사업계정 : 6.2조 원 • 지역혁신사업계정 : 2.0조 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0.4조 원 ⇒ 합계 : 8.6조 원(2009년 예산기준)	• 지역개발계정 : 3.7조 원 • 광역발전계정 : 5.8조 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0.4조 원 ⇒ 합계 : 9.9조 원(2010년 예산기준)
지역계정	• 200여 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
재 원 배 분	• 과거 실적치(자원배분모델 적용)기준으로 자원배분 ※ 지역개발계정의 시·도자율편성사업	• 지자체 노력 및 성과 등과 연동된 자원(인센티브)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 산 편 성		

자료: 신두섭(2014)에서 재인용.

○ 2014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개편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도 전환되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방향은 다음과 같음.

- 지역의 자율성 확대
- 시도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 국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체감도 제고
- 지역 녹화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투자 강화
-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그림 3-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vs 지역발전특별회계

구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적	•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회계구조	① 지역개발계정 -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② 광역발전계정 -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① 생활기반계정으로 개명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 추가하여 25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 지특회계, 일반회계 등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  ② 경제발전계정으로 개명 - 5 + 2 권역을 폐지,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전환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세종특별자치도계정(신설) (사회발전계정 신설 검토중)
예산편성	예산신청(5. 31)      예산요구(6. 30) 지방 → 부처 → 기재부 ↑ 지역위 평가결과(6. 30)	예산신청(5. 31)      예산요구(6. 13) 지방 → 부처 → 기재부 ↑ 지역위 예산편성의견(5. 31) 평가결과(6. 13)
예산집행	•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 시 국고 반납) • 사업집행 후 남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업에 전용 가능	•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 시 국고 반납) • 사업집행 후 남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업에 전용 가능

자료: 신두섭(2014)에서 재인용.

○ 기획재정부(2009)에서 밝힌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개별 지원(보조)사업을 포괄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기존 일부 보조금 사업들이 갖는 유사중복의 문제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의 통폐합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재원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부 사업의 내용을 직접 설계·집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 가능
-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사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후 성과 관리 평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자율성의 허용과 책임을 강조하는 체계로의 전환 도모

- 국내 복지분야 사업 중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음.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기본방향은 지역의 수요와 욕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포괄보조사업임.
-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전자바우처 사업 중 3개 사업을 통합하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하여 내역사업을 수행함.
-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사업내용 및 예산운용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함.
  - 시·군·구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 내역사업 간 기준소요액 대비 ±50%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정이 가능함.

〈표 3-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별 특성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예산액 (국비)	보조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 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지역선택형 1개 사업) ·지역개발형사업 (700여개 자체개발사업을 주요 사업군으로 분류)	145,204	서울 50%, 지방 70%, 신성장촉진 지역 8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27,289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지원	18,184	
총액		190,677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014.

- 그러나 현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실제 운영방식은 재원만 포괄해서 지원하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내역사업별 담당자가 있는 경우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어려움.
  - 기존의 개별보조금방식에서와 같이 포괄하여 관리조정하기 어려워, 지역의 자율적 사업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의 경우 다른 두 사업과 집행체계가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함.
    - 예) 인천시의 경우 보육정책과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을 관리하고, 보건소라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복지봉사과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관리를 개별사업으로 운영
  - 사업총괄부서 및 담당자가 부재한 경우 개별보조금방식과 같이 각 내역사업들이 개별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운영 및 조정에 있어 자율성이 제한적임.
  - 한편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총괄담당자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굴과 같은 사업조정이 이루어짐.
    - 예)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괄담당자가 있어 내역사업간 조정을 통해 중복조정 및 사각지대 발굴한 사례가 있음.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하는 사업임(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 전국대상의 국고보조사업에서 2013년에 지역상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자체 주도의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개선됨.
  -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재원지원을 전환하여 지역별 건강문제, 건강자원의 상이한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분야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방식을 변경함.
    -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지자체가 내역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함.

○ 기존의 보건소 건강증진 국고보조 사업에서는 17개 사업이 개별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유사한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방향과 긴밀한 관련성 없이 진행되어 왔음(〈표 3-3〉).

〈표 3-3〉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비교

구 분	기존 국고보조사업 (특정보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포괄보조)																														
목적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이나, 지역적인 목적 달성만 가능(예 : 금연클리닉 (금연 실천))	·국가 건강증진 정책방향과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목적 일치시킴(예 : 금연사업 (흡연 예방 및 금연))																														
구성	·17개 사업간 연계성 없이 운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td></tr> <tr><td>② 지역사회중심재활</td></tr> <tr><td>③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td></tr> <tr><td>④ 영양플러스사업</td></tr> <tr><td>⑤ 보건소 금연클리닉</td></tr> <tr><td>⑥ 모유수유클리닉 운영</td></tr> <tr><td>⑦ 철분제, 엽산제 지원</td></tr> <tr><td>⑧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td></tr> <tr><td>⑨ 어린이 구강건강관리</td></tr> <tr><td>⑩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td></tr> <tr><td>⑪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td></tr> <tr><td>⑫ 치매조기검진사업</td></tr> <tr><td>⑬ 치매노인사례관리</td></tr> <tr><td>⑭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td></tr> <tr><td>⑮ 한의약 지역보건사업</td></tr> <tr><td>⑯ 아토피천식 예방관리</td></tr> <tr><td>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td></tr> </table>	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② 지역사회중심재활	③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④ 영양플러스사업	⑤ 보건소 금연클리닉	⑥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⑦ 철분제, 엽산제 지원	⑧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⑨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⑩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⑪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⑫ 치매조기검진사업	⑬ 치매노인사례관리	⑭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⑮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⑯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1개 사업으로 통합, 포괄적 운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① 금연</td></tr> <tr><td>② 절주</td></tr> <tr><td>③ 신체활동</td></tr> <tr><td>④ 영양</td></tr> <tr><td>⑤ 비만</td></tr> <tr><td>⑥ 구강보건</td></tr> <tr><td>⑦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td></tr> <tr><td>⑧ 한의약 건강증진</td></tr> <tr><td>⑨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td></tr> <tr><td>⑩ 여성어린이 특화 (모자보건)</td></tr> <tr><td>⑪ 치매관리</td></tr> <tr><td>⑫ 지역사회중심재활</td></tr> <tr><td>⑬ 방문 건강관리</td></tr> </table> ✓ 사업 영역 제시(HIP 2020) → 지자체 선택 ✓ 사업간 칸막이가 없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설계 가능	① 금연	② 절주	③ 신체활동	④ 영양	⑤ 비만	⑥ 구강보건	⑦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⑧ 한의약 건강증진	⑨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⑩ 여성어린이 특화 (모자보건)	⑪ 치매관리	⑫ 지역사회중심재활	⑬ 방문 건강관리
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② 지역사회중심재활																																
③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④ 영양플러스사업																																
⑤ 보건소 금연클리닉																																
⑥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⑦ 철분제, 엽산제 지원																																
⑧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⑨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⑩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⑪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⑫ 치매조기검진사업																																
⑬ 치매노인사례관리																																
⑭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⑮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⑯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① 금연																																
② 절주																																
③ 신체활동																																
④ 영양																																
⑤ 비만																																
⑥ 구강보건																																
⑦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⑧ 한의약 건강증진																																
⑨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⑩ 여성어린이 특화 (모자보건)																																
⑪ 치매관리																																
⑫ 지역사회중심재활																																
⑬ 방문 건강관리																																
운영체계	·(중앙정부) 사업 부서에서 연계성 없이 개별 운영관리, 교육 실시 ·(지자체) 17개 사업 분절·획일적, 경직적으로 운영	·(중앙정부) 건강정책과는 사업 총괄, 사업부서는 사업운영 및 교육 지원 ·(지자체) 사업영역 중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세부사업 설계																														
재원배분	·국고보조사업별 재원배분 ·사업신청에 따른 예산 배분	·지자체 재정여건 등과 연동된 재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산	·935억원	·992억원(6.1% 증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2014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등 17개 국고보조사업을 ‘금연’, ‘절주’ 등 건강목표, 건강영역 중심의 13개 사업 영역으로 구분하여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표 3-3〉).
-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설계를 가능하게 함.
  - 중앙정부의 건강정책과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시군구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업의 전달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음.
  - 990억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어, 사업운영 및 조정이 용이함.
- 이를 통해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방향과 지자체의 사업목표를 일치시키고, 지자체가 해당 사업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세부사업을 설계하고, 사업간 유기적 연계성을 증진하도록 개선하였음(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 지자체의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업추진 과정 및 성과의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하였음.
  - 기존의 단순한 산출량 (예: 사업별 참여자 수) 중심의 평가에서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사업운영 과정 및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수행
- 포괄보조금방식 도입 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성과 결과(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에서 다양한 사업성과를 성취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서울시)의 경우, 주로 사업총괄 및 조정 업무, 시군구(자치구) 사업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나타냈음.
- 첫째, 총괄관리자 및 13개 사업영역별 담당자 지정, Task Force 팀 구성을 통해 사업운영의 책임성, 연계성 및 효율성을 증진함.
  - 통합건강증진지원단과의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영역별 추진상황, 계획 등을 점검하고, TF 팀 구성을 통해 사업평가를 수행함.

- 둘째,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현장방문, 간담회 등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매뉴얼, 사업계획 수립 등에 적용하여 사업운영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함.
- 셋째, 지자체 사업지원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운영하여 시군구(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사업운영, 평가보고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함. 이를 통해 시군구(자치구)의 사업기획, 운영, 평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 2013년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 따르면, 우수 자치구(송파구, 강동구)의 경우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의도한 목표대로 1) 지역주민 특성에 적합한 사업추진, 2) 사업의 유사중복 감소, 3)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노력 증진, 4)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증진, 5) 업무의 효율적 배분 등의 성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송파구의 경우, 지역사회 분석에 기반하여 기존의 13개 사업을 1)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2) 건강증진, 3)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등 3개의 종합사업으로 통합 운영함.
  - 또한 U-health를 이용한 원격 건강관리를 통해 취약지역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리더/건강동아리 등 주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성과는 포괄보조금 도입 등 재정방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통합된 사업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총괄, 조정능력,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단, 지자체의 노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는 포괄보조금방식 도입을 통해 의도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재정방식의 변화와 함께 책임 있는 행정관리능력의 증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제2절 미국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 포괄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부문에 대해 특정 규모의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의 일종임.
- 포괄보조금이 지원되는 주요 분야는 지역사회 개발, 사회서비스 공공의료 및 법률 규정에 따름.
- 포괄보조금 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 옹호의 입장에서는 분권화, 의사결정 권한의 부분적 지방이양 등을 통해 사업운영의 권한과 책무성을 분산시킴으로써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사업효과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함.
  -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는 연방정부의 국가 목표 달성을 약화시키거나, 대내적 이슈에 대한 정부지출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함.
  - 일례로 메디케이드(Medicaid)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와 같은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가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심각하게 임의 축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아울러 포괄보조금 방식이 갖는 분권화 특성은 재정지원의 성과측정을 어렵게 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해 의사결정에 대한 공식적 책임을 지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표 3-4〉 미연방 포괄보조금 사업 현황(FY2014)

(단위: \$)

연방정부 관련부처	포괄보조금 사업/프로그램	보조금 규모
Dept. of Education	Innovative Education Program Strategies Block Grant(이하 BG)	-
Dept. of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BG	-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 Care and Development BG	5,277,000,000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BG	483,744,000
	Community Services BG	709,854,000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BG	3,424,549,000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G	634,000,000
	Preventive Health and Health Services BG	160,000,000
	Social Services BG	1,577,600,000
	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BG	1,819,856,000
	Temporary Assistance tn Needy Families	17,349,303,000
Title V Abstinence Education BG	46,000,000	
Dept. of Homeland Security	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s(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s, 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Grant, Operation Stonegarden)	1,066,346,000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BG	3,030,000,000
	Indian Community Development BG	70,000,000
	Emergency Solutions Grant Programs	250,000,000
	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s	1,000,000,000
	Indian Housing BG	648,000,000
	Native Hawaiian Housing BG	10,000,000
Dept. of Justice	Edward Byrne Memorial Justice Assistance Grant	376,000,000
Dept. of Labor	Workforce Investment Act(Youth, Adult and Dislocated Workers)	2,588,108,000
Dept. of Transportation	Fed Aviation Administration Airport Improvement State BG Surface Transportation Program	232,865,246 10,089,729,416
전 체		50,843,354,662

## 1.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

□ 1981년 개정된 미국 사회보장법 (Title XX of the Social Security Act)을 바탕으로, 주정부에 광범위한 자율성을 주어 빈곤층, 아동, 노인 등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계획, 개발, 운영, 평가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 이하 SSBG) 재원을 배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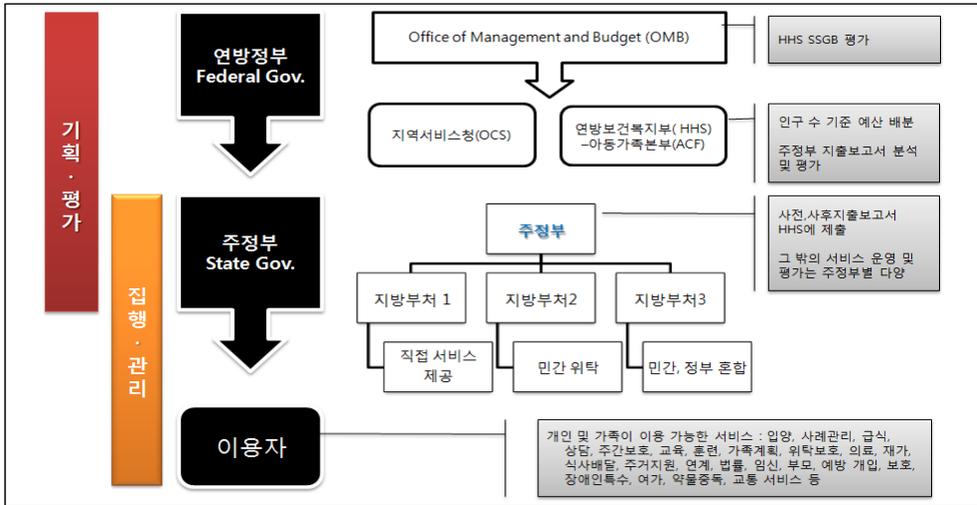
○ SSBG 예산의 배분은 다음과 같은 목적 적합성이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출을 허용(capped entitlement program)함.

- 경제적 자립 달성 및 유지를 통해 복지의존도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자활자립생활의 달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자기 보호에 취약한 성인 및 아동 등에 대한 방임, 학대, 착취 등을 방지하고, 구제 및 보호, 재활, 가족재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 원가정(family of origin) 보호 등을 통한 부적절한 대규모 시설 보호의 예방 및 점진적 축소
- 최후의 보루로서 시설보호의 보장

○ SSBG 운영·관리 및 지원의 기능은 다양한 부처에서 관여하고 있음.

- 지역서비스청 (Office of Community Services, OCS)
- 연방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 DHHS 소속 아동가족본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그림 3-5] 미국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운영 흐름



- SSBG를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들은 주정부, 민간, 주정부와 민간 혼합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음.
- 주정부는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및 기금 운용 방식 등을 연방법(Federal law)에 따라 집행함.
  - 주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검증된 기관 혹은 서비스 조직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 병행함.
  - SSBG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훈련, 자격제도, 계획, 평가 등 사업관리 기능도 수행함.

○ 2006년 2월 「2005 Deficit Reduction Act(DPR)」의 통과에 따라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한시적 요보호가족 지원 (Temporary Assistance to Needed Families, TANF) 포괄보조금'의 10%까지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SSBG 프로그램 이용자 가운데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과 빈곤선 200%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SSBG 예산 전용 가능함.
- 2010년 기준, 전체 주정부 SSBG 총 지출액은 28억 달러이며, 그 중 42% (12억 달러 규모)는 TANF 포괄보조금 재원으로 전용함).

□ SSBG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유형은 29개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아동, 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유지 및 삶의 질 관련 서비스로 집약됨.

〈표 3-5〉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 지원 대상 서비스 목록

SSBG 서비스 유형 목록		
1. 입양서비스	11. 아동위탁보호서비스	21. 성인보호서비스
2. 사례관리	12. 의료서비스(health-related)	22. 아동보호서비스
3. 급식	13. 재가서비스	23. 여가레저서비스
4. 상담서비스	14. 식사배달서비스	24. 시설보호서비스
5. 성인주간보호	15. 주거지원서비스	25. 장애인특수서비스
6. 아동주간보호	16. 독립·전환기생활서비스 (independent & transitional)	26. 위기청소년보호
7. 교육·훈련서비스	17. 연계서비스 (information & referral)	27. 약물중독서비스
8. 교육서비스	18. 법률서비스	28. 교통·이동서비스
9. 가족계획서비스	19. 임신·부모서비스	29. 기타서비스
10. 성인위탁보호서비스	20. 예방·개입서비스	

○ 2010년 기준, SSBG로 제공된 서비스 이용자 수는 대략 2천4백만 명이며, 이용자의 52%가 아동이었으며, 대부분 돌봄·보호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었음.

○ 2012년 회계 연도 기준 SSBG 예산 전체 할당액(17억 달러) 중 30% 이상이 4개 주정부에 할당함.

- 캘리포니아 (2억 3백만 달러), 텍사스 (1억 3천8백만 달러), 뉴욕 (1억 6백만 달러), 플로리다 (1억 3백만 달러) 등임.

- 연방정부의 SSBG의 배분 원칙은 주정부 관할구역 내 인구수에 비례하며, SSBG 배분 산식은 다음과 같음.

$$\text{배분액} = (\text{SSBG총예산} - \text{Puerto Rico, Guam, Virgin Islands, Northern Mariana Islands, America Samoa 배정분}) \times \frac{\text{주인구}}{\text{총인구}}$$

5) 2010년 기준, 캘리포니아 등 일부 SSBG 예산규모 상위 주정부들은 사회서비스 관련 전체 포괄보조금 지출액 중 SSBG 배당금보다 TANF 기금에서 이전받은 금액이 더 큼.

○ 2010년 회계 연도 기준 SSBG 상위 프로그램 (시행 주, SSBG 총 기금)<sup>6)</sup>

- 가정위탁(foster care)보호서비스 (25개 주, 3억7천6백만 달러)
- 아동주간보호 (37개 주, 3억7천1백만 달러)
- 장애인특수서비스 (39개 주, 3억4천4백만 달러)
- 아동보호서비스 (39개 주, 2억1천백만 달러)
- 사례관리 (28개 주, 2억 4백만 달러)
- 재가서비스 (34개 주, 1억 8천3백만 달러)
- 성인보호서비스 (34개 주, 1억 8천백만 달러)
- 예방·개입서비스 (28개 주, 1억 7천9백만 달러)

□ SSBG 지출 사항은 각 서비스 범주 별 지출 사항, 서비스 대상자 수, 아동 및 성인 이용자의 비율 등을 반영해야 하며, SSBG를 통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지원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수를 포함하도록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주정부는 사전-사후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주정부는 사전 지출 보고(pre-expenditure report)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들의 범주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SSBG 예산을 신청함<sup>7)</sup>.

-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사전지출보고서를 지역서비스청(OCS), 연방 보건 복지부(DHHS), 아동가족본부(ACF)에 제출함.
- 지역서비스청(OCS)에서 제공하는 사전지출계획서 예시에 따라 서비스 및 이용자 유형별로 보고함<sup>8)</sup>.
- 지출 시행 중 사전 지출 보고의 변경 내역이 있을 경우 수정본 다시 제출함.

6) SSBG Fact Sheet, september 17, 2014 published, Office of Community Services (<http://www.acf.hhs.gov/>)

7) [부록 2] 참고

8) [부록 2-1] 참고. 2010년 OCS가 사전지출보고 양식 개발 전, 주정부별 사전 및 사후 지출 보고 형식이 다양했음. 서비스 종류 별 및 대상자 수 별 기금 지출 계획 및 분석을 통해 사후지출보고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음. 2010년 이후 44개 주정부가 사전지출보고와 유사한 양식으로 사후지출보고 양식을 사용

- 아울러, 매년 주정부는 반드시 SSBG 지출사항, SSBG 예산 외 재원의 출처 등을 표준화된 사후지출 보고서 양식(standard post-expenditure reporting form)을 통해 보고해야 함).
  - 사전 지출 보고 6개월 후, 혹은 다음 사전 지출 보고 제출시까지 보고해야 함.
- 행정 지출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 매년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이 주관하여 DHHS의 SSBG 운영 실태를 평가함.
  - 주정부별로 SSBG 예산이 포괄보조금 지원 사업 본연의 유연성에 맞게 효과적·효율적 활용 여부를 사전 지출보고서(pre-expenditure report)와 사후 지출 보고서(standard post-expenditure report) 비교·분석함.
  - 사전지출 및 사후지출보고서 분석의 주요 목적은 행정적 비용(administrative costs)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
    - SSBG 운용관련 행정 비용에는 관련 인력의 교육, 자격제도 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간접비용 등이 포함됨.
    - 주정부에 따라 SSBG 운용관련 행정 지출비용은 전체 SSBG지출의 9%를 초과할 수 없음.
    - 이러한 예산집행 관리 과정을 거쳐 2006~2010년 기간에 전체 SSBG 관련 행정 비용은 34% 감소하였으며, 2010년 행정 집행 비용 9천2백만달러로 전체 SSBG 지출의 3%에 그침.
      - 심지어 12개 주정부에서는 SSBG 운용 관련 행정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 OMB 및 연방정부는 연방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개발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SSBG를 포함한 연방 기금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운영 지침 제시함.

9) [부록 3] 참고.

- 평가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조정·조치 등이 필요한 1~2개 핵심 영역에 대해 정책조언을 전달하며, 사후 조치(follow-up action)는 이보다 훨씬 넓고 추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SSBG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음.
  - 평가지표는 4개로 ① 프로그램 목적 및 디자인, ② 전략적 계획, ③ 프로그램 관리, ④ 프로그램 결과/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점을 100%로 환산하기 위하여 지표별 가중치가 적용됨.
  - 총점은 질적인 등급으로 변환됨. 총점의 범위가 85-100일 경우 effective, 70-84인 경우 moderately effective, 50-69인 경우 Adequate, 0-49인 경우 ineffective로 평가함.
  - 평가체계가 부재한 경우에는 총점과 관계없이 '결과미제시(Results Not Demonstrated)'로 판정함.
  - 프로그램 목적 및 디자인의 가중치는 20%이며 평가내용은 5개의 항목으로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됨.
  - 전략적 계획의 가중치는 10%이며,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됨.
  - 프로그램 관리의 가중치는 20%이며, 항목은 9개로 구성되어 있음.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됨.
  - 프로그램 결과/책임의 가중치는 50%를 적용하며, 항목은 5개로 구성되어 있음.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대체로”, “약간”, “그렇지 않다”로 구성됨.
  - <표 3-6>은 SSBG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사례를 제시함.

〈표 3-6〉 미국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연번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근거	대답	점수
Section 1. 프로그램 목적과 설계 (Program Purpose & Design)					
1.1	명료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SSBG는 사회서비스 자금 사용 및 운영에 있어서 주정부의 재량을 증진하는 것에 초점	사회보장법	Yes	20%
1.2	현 사회 문제, 관심사, 욕구 등을 반영하는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 예) 2002년 약물 남용 관련 6백만 명 이상이 적절한 재활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노동청, 아동가족본부, 약물 남용과 정신건강서비스청 등 관련 홈페이지 외	Yes	20%
1.3	연방, 주, 지방, 사적 영역에서 운영하는 타 프로그램과 중복 없이 설계되었나?	아동보호발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노인법(Older Americans Act), TANF, 지역개발포괄수가(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등 SSBG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연방 기금들이 있음	2003 SSBG Annual Report	No	20%
1.4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 한하는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나?	SSBG는 주정부의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보고만 받음. 개별 프로그램 활동과 결과 등은 주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사회보장법	No	20%
1.5	프로그램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목표 달성 등과 관련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나?	SSBG는 주정부의 사전 및 사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고, HHS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SSBG 자금 외 자원 보충에는 관여하지 않음. 대신 주정부들은 TANF 기금의 10%를 SSBG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사회보장법 외	No	20%
Section 2. 전략적 계획 (Strategic Planning)					
2.1	장기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가?	프로그램 관련, 성과 지표들은 주정부에 따라 다르며, HHS는 장기적 수행 평가 지표 개발 가능성을 탐색 중	2006년 미의회 보충 수행 정보 관련 보고서	No	12%
2.2	장기적인 성과 지표 대상 및 일정은 수립되었는가?	2.1 참고		No	12%
2.3	장기 목적 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지표들이 있는가?	HHS는 연간 수행 지표 개발 가능성을 탐색 중		No	12%
2.4	연간 평가 지표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갖고 있나?	2.3 참고		No	0%

연번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근거	대답	점수
2.5	이용자, 제공자, 주정부 등 모든 SSBG 관련 파트너들이 장기 목표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가?	SSBG는 연간, 혹은 장기적 수행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각 주정부에 역할을 일임함.		No	0%
2.6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충분한 양의 피드백, 질적 측면들을 고려한 독자적인 평가들이 있는가?	HHHS는 특정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특정 주 정부에 국한하여 일시적으로 SSBG 자금 운용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평가의 적절성이나 질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없음		No	0%
2.7	수행 실적이나 업적에 따라 명확한 예산 배분이 이뤄지는가?	SSBG는 이용자별, 제공자별, 주정부 부처별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들을 보고하지 않음	ACF 목적 및 목표, 2004-2008 회계 연도 HHS 목적 및 목표 외	No	0%
2.8	제도운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가?	주정부 및 연방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계획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정부 행정 데이터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2003 SSBG Annual Report	Yes	12%
<b>Section 3. 프로그램 관리 (Program Management)</b>					
3.1	주요 프로그램 내용과 파트너들에 관한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확보하고 있는가?	SSBG는 명확히 정의된 수행 기준이 없음. SSBG 내에 수행 결과에 관해 주정부의 책임을 묻는 지표 없음	2003 SSBG Annual Report 외	No	0%
3.2	연방 관리자와 프로그램 파트너들은 비용, 일정, 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가?	SSBG 연방 관리자는 정의된 혹은 정량화된 수행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 주정부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음	2003 SSBG Annual Report 외	No	0%
3.3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쓰이고 있는가?	주정부는 SSBG기금을 SSBG 계획의 틀 내에서 때맞춰 사용할 의무가 있음. 이를 위해 증명하기 위해 주정부는 사전, 사후지출보고서 제출해야함	2003 SSBG Annual Report 외	Yes	11%
3.4	보상, IT개선, 비용 분석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가?	없음		No	0%
3.5	유사 혹은 관련된 프로그램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주정부 차원에서, SSBG 기금은 연방, 주정부, 지방 직원들에 지원받는 프로그램들과 종종 협력하고 있음	e.g.) Arizona주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경우 60세 이상 이용자는 주정부가, 청년 이용자의 경우 SSBG가 지원	Yes	11%

연번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근거	대답	점수
3.6	강력한 재정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각 주는 적어도 년 2회 회계감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를 HHS에 보고하여야 함. 부적절하게 사용된 기금의 경우 반환하거나 혹은 HHS가 다음해 SSBG 기금에서 그만큼을 차감. ACF 관리자들은 매년 연방재정통합법에 따라 내부 감사 및 관리가 되어있는지 증명해야함	사회보장법	Yes	11%
3.7	관리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가?	없음		No	0%
3.BF1	주정부들의 SSBG 활동들을 이해, 감독하고 있는가?	주정부들의 사진, 사후 지출보고서를 통해 관리	2003 SSBG Annual Report 외	Yes	11%
3.BF2	주정부들의 SSBG 관련 업무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공개하고 있는가?	주정부는 지역서비스청(OCS)에 연간 데이터를 제출함. 주 정부차원의 데이터들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연간 보고서에 게재	2003 SSBG Annual Report 외	Yes	11%
Section 4. 프로그램 결과/책임 (Program Results/Accountability)					
4.1	장기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진행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2.1 참고		No	0%
4.2	연간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2.3 참고		No	0%
4.3	매년 효과적·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SSBG는 비용 효율성이나 비용 효과성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음		No	0%
4.4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공적, 사회적 프로그램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가?	TANF, 가정, 지역사회기반 지원 서비스 등에 비해 SSBG는 주정부에 운영 유연성을 부여하고, 보고 의무는 최소화	사회보장법	다소	7%
4.5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목적 달성 정도에 관해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가?	2.6 참고		No	0%

주: 2005년 미국 연방정부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의 SSBG 사정한 결과이며, section1은 40%, section2는 12%, section3은 56%, section4는 7%를 달성하였음. 최종점수는 각 section 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총점 100%로 환산하여 산출함. 그러나 본 사업은 최종점수에 관계없이 성과평가에 대한 국가적 지표 및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과미제시” 판정을 받았음.

출처: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OMB/expectmore/detail/10003503.2005.html>

## 2. 지역사회개발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1974년 미국 주택및지역개발법(Title I of 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이하 HCDA)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역사회 개발관련 사업들이 지역개발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이하 CDBG)으로 통합된 이후, 1995년부터 2006년까지 HCDA는 CDBG 운영자의 유연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함(US HUD, 2014).
- HCDA에 따르면 실행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은 주로 저소득층·빈곤층에 적절한 주택 및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CDBG 운영 및 실행의 기능은 다음의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음.
  - 지역개발재정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CDFI)
  - 지역사회기반개발기구(Community-based Development Organization, CBDO)
  -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 특히 HUD는 a) 주택혼잡, 인구수 및 빈곤수준, b) 주택년도, 인구성장 지체(lag)정도, 빈곤수준 등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CDBG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며 CDBG 예산 배분은 다음과 같은 목적 적합성이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지출이 허용되고 있음(이재원 외, 2012).
  - 저소득 취약계층 및 중산층에 대한 편익 증진
  - 주거환경의 슬럼화, 황폐화 방지 및 해당요소의 제거
  - 시급성을 가지는 지역사회 개발 수요
  - 지역사회 편익시책: 공원, 주민 센터 등 특정 거리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최소 절반 이상의 CDBG 교부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지침으로 제시함.

□ CDBG는 다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Entitlement CDBG와 State CDBG로 구분됨.

○ 인구 5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이나 인구 2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 및 카운티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이용)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Entitlement CDBG와 인구 5만 명 이하 도시 혹은 인구 20만 이하의 카운티 (non-entitlement 지역)는 State CDBG로 구분됨.

○ CDBG 프로그램의 70%가 Entitlement CDBG이며, 주요 프로그램 범주는 다음과 같음(US HUD, May 2014).

〈표 3-7〉 지역개발포괄보조금 사업의 범주

CDBG 지원 범주	
1. 공공용지 (Open Space)	5. 모델시티보충기금 (Model Cities supplemental grants)
2. 도시재개발 (Urban Renewal)	6. 공공시설대출 (Public Facilitates loans)
3. 이웃개발프로그램기금 (Neighborhood Development grants)	7. 이웃시설기금 (Neighborhood Facilities grants)
4. 문화재 보존 기금 (Historic Preservation grants)	8. 상하수도기금 (Water and Sewer grants)

○ 2013년 회계 연도 기준 CDBG 전체 지출액은 약 35억 6천 5백만 달러이며, 포괄보조금 지원규모 상위 사업은 다음과 같음(US HUD, 2014).

- 공공 개선(Public Improvements): 전체 CDBG 프로그램 지출의 36.04% (약 12억 8천만 달러)
- 주택(housing): 전체 CDBG 프로그램 지출의 24.71% (약 8억 8천만 달러)
-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전체 CDBG 프로그램 지출의 10.29% (약 3억 7천만 달러)

○ CDBG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적어도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HUD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이재원 외, 2012), 행정 및 계획을 위한 비용은 CDBG 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sup>10)</sup> (US HUD, May 2014).

10) 2013년 회계 연도 기준 CDBG 전체 지출액 중 행정 및 계획과 관련된 지출은 약 4억 9천 7백만 달러로, 전체 지출액의 13.93%

- 직접비는 프로그램 및 세부 활동전달체계 비용이며 이외 일반 행정비용은 연간 전용비의 20%로 제한되는데, 주(州)마다 허용 범위와 계산법이 다름.
  - 교부금 만기시점 전에 전체 액수가 30만 달러 혹은 전체 교부금의 2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사전지급비(pre-award) 사용 가능
  - 프로그램소득(program income)은 부동산 처분 및 임대 소득 등 CDBG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간 2만 5천달러 초과 불가
  - 전체 행정 비용이 지원금 규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CDBG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에 사용 가능하고, 새로운 CDBG 교부금 시행 전에 반드시 지출
  - 유동자금(float funded)을 통해 CDBG 내 다른 프로젝트로 전용 가능하나, 주정부는 배분 방식을 반드시 명시
  - 정부의 일반 업무 수행을 위한 건물 건설, 일반정부지출, 정치적 목적의 활동들, 개인이나 가구에 소득 지급 등의 지출 불가

□ 보조금 관리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해 기금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 관리 및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HUD는 CDBG 관련 평가 실시함(US HUD, May 2014).

○ 주정부는 매년 CDBG 관련 정책 및 성과정보를 정기적으로 통합지출정보체계(Integrated Disbursement and Information System, 이하 IDIS)<sup>11)</sup> 등을 이용해 HUD에 보고해야함.

- IDIS에 입력 시 연간 지침서에 따라 한 프로젝트 당 하나에서 두 개의 활동들에 관해 사업의 시작, 예산, 지출, 완료 등을 보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행성취도 및 평가 결과가 보고됨.<sup>12)</sup>

○ 지역계획개발(Community Planning Development, 이하 CPD)은 CDBG 당초 목표(적절한 주거환경 조성, 적정 가격의 쾌적한 주거지 제공, 경제적 기회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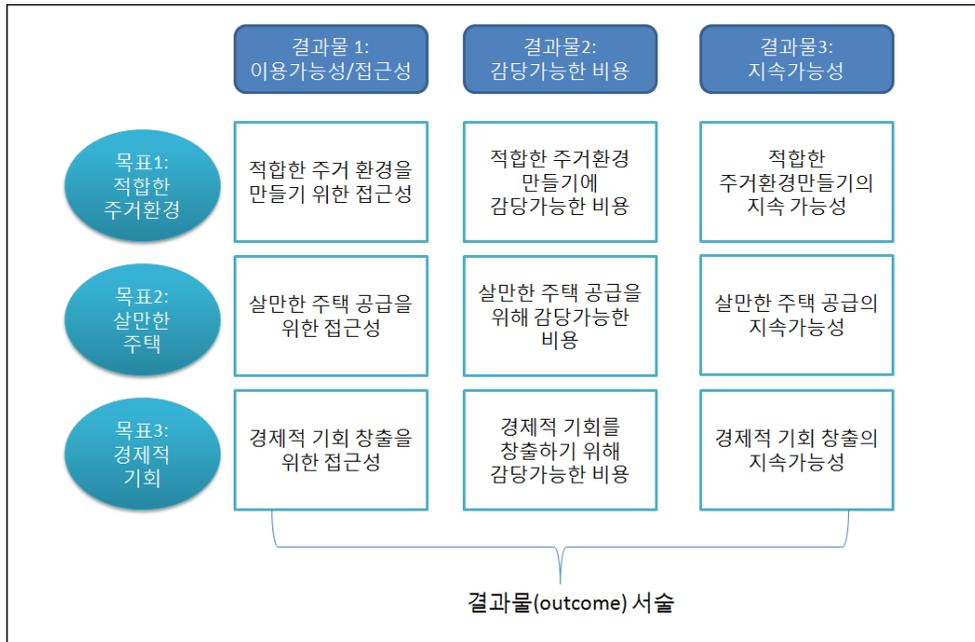
11) IDIS는 CDBG, HOME(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 ESG(Emergency Solutions Grant Program), HOPWA(Housing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ADIS Program) 등 지역사회 계획 및 개발 기금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관리, 평가하기 위한 온라인 보고 시스템

12) [부록 3] 참고

출)와 결과(유효성 및 접근가능성, 적절성, 적당한 가격)를 기준으로 측정함.

- CPD 성과측정은 ‘자본 대비 자산 비율(leverage) 규모’, ‘혜택 받는 사람, 가구, 사업체, 유닛 등의 규모’,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 ‘인종, 민족, 장애 별 프로그램 데이터’ 등과 같은 공통 지표로 구성됨.
- 프로그램 및 활동에 따라 ‘공공시설/인프라’, ‘공공서비스’, ‘활성화 대상’, ‘비영리사업’, ‘재개발용지 개선’, ‘상업 빌딩 재건’, ‘건설/재건된 유닛 임대’, ‘노숙인 쉼터’, ‘노숙인 방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사업 보조’,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 특정 지표 포함

[그림 3-6] HDU CPD 결과물(outcome) 측정 틀



자료: US HUD (2014), 『Basically CDBG』, Slide 307.

○ CDBG 필수 이행조건 (requirement) 관련 평가를 위해 주정부는 연간연합수행 평가보고(Consolidated Annual Performance and Evaluation Report, 이하 CAPER)와 수행평가보고(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이하 PER)를 제출함.

- CDBG 교부를 받은 이들은 프로그램 해당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의 90일 내에 CAPER와 PER를 HUD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하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 4년간 보관해야 함.
- 일반 행정, 재정, 프로젝트/세부 활동에 관한 자료, CDBG 목표 준수 여부, 수혜자들 특성, CDFI와 CBDO 관련 사항, 기타 연방 정부의 필수 요구사항 등을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정보 접근성 부여함.

○ HUD의 기금 수혜자, 기금수혜자의 공공 기관 파트너, CBDO 등은 주기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해 프로그램 혜택, 환경, 재정, 물품조달, 노동, 시민참여,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과정 및 보고 등에 관해 모니터링 받음.

[그림 3-7] 미국 지역사회개발포괄보조금(CDBG) 이행 과정



자료: US · HUD (2014), 『Basically CDBG』, Slide 14.

### 제3절 국내외 포괄보조사업의 성과와 한계

- 국내외 사회서비스 부문 주요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검토한 바,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상의 쟁점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포괄보조금 방식의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포괄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수준의 재량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으나, 지자체의 집행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음.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또한 사업단위로 관련 단위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 규모를 줄이게 되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축소될 수 있으나, 포괄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업에 따라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자체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재원분담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만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과관리가 관건으로 대두됨.
  - 동시에 재원의 단순 '나뉘먹기' 현상을 차단하면서 정률 보조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함.
- 
- 미국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과 지역사회개발포괄보조금(CDBG) 운영과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포괄보조금방식 확장시 벤치마킹하거나 심층적으로 검토해볼 의의가 있는 특이점과 한계가 있음.
  - 운영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특이점
    - 주정부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보장함으로써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고 있음.
    - SSBG의 경우 사전 지출계획 및 사후지출 보고의 형식에 있어서 강제성은 없지만, 표준화된 양식 제공하여 운영관리 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 SSBG 지원사업 자체의 사업적 성과 향상을 위해 장단기 혹은 연간 수행 평가 지침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TANF 기금 중 10%를 SSBG 프로그램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여 주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CDBG는 Entitlement CDBG와 State SSBG로 나누어 지역사회규모에 따라 기금 유용 형태를 달리하여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IDIS, CAPER, PER 등을 이용해 SSBG보다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갖춘.
- 그럼에도 불구하고 SSBG와 CDBG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는 향후 제도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 Budget)의 SSBG 기금 평가 항목들과 HUD의 CDBG 결과 측정 틀은 프로그램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일부 평가 항목들은 중복됨.
  - 특히 SSBG는 사전·사후 지출보고 이외의 주정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평가 체계가 전무하며, 일부 제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주정부, 혹은 일부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단편적, 즉흥적으로 실시되므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임.
  - SSBG와 CDBG 평가의 주된 목표는 행정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예산 절약 측면으로 포괄보조금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도는 극히 제한적임.
  - TANF 기금의 일부를 SSBG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 사회보장·복지라는 하나의 한정된 자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변경으로 전체 사회복지 대상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질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국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정책방향 결정에 있어 미국의 SSBG와 CDBG운영 경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및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고,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관리와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라 판단됨.
- 지방 정부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복지부문 적용에 앞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관계 규명과 역할분담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또한 지자체 사업담당자, 예산운용자, 조직관리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정착 노력이 필요함.

66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특히 단순히 예산의 집행·관리 차원을 넘어서 사업수행 측면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력관계 설정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사료됨.



## 제4장

# 포괄보조사업군 유형화 기준 및 평가

제1절 포괄보조금의 개념 및 특성

제2절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 적격성 평가기준

제3절 포괄보조금방식 적절성 평가틀을 이용한  
사업군 도출(안)



# 4

## 포괄보조사업군 유형화 기준 및 평가 <<

- 본 장에서는 복지사업의 포괄보조금방식 전환 적절성 평가들을 제시하여 각 사업의 포괄보조금방식 전환 적절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포괄보조금대상 사업군을 도출하여 유형화(안)을 제시하고자 함.
-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전환하기 적절한 조건 탐색에 앞서, 포괄보조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함.

### 제1절 포괄보조금의 개념 및 특성

- 국가보조금은 용도지정과 지방정부의 부담금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됨(Fisher 1996; 조재환·이한성, 2013 재인용:146).

〈표 4-1〉 국가보조금제도의 분류와 특성

구분	일반보조금	특별보조금	포괄보조금
용도지정	X	○	○ 또는 X
지방비부담	X	○	○ 또는 X
용도 자율성	제한 없음	제한적임	블록내에서만 자율적

- 포괄보조금방식은 중앙정부가 핵심 목표 또는 기능별 사업군을 포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받은 예산을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하는 방식임.
- 개별사업을 선정하고 가격을 설정하는 등 기존의 중앙정부가 담당했던 사업심의 및 운영과정의 핵심적인 결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함.
-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복지 분야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논의됨.

□ 포괄보조금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조기현, 2012; GAO, 1995).

- 기존의 특별보조금방식에 비해 예산편성의 자율성, 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에 서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음.
-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음(이재원, 2003; 송미령 외, 2011).
  - 지역에 적합한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음.
- 사업조정 및 기획과정에서 유사 중복사업 예방 및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고, 조정과정을 통해 부처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함.
  - 개별보조금방식에서는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할 유인이 적어 유사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업기획 및 실행과 관련된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제2절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 적격성 평가기준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이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함. 선정된 개별 사업을 포괄보조금방식 사업군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본 절에서는 포괄보조금방식에 적합한 사업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안하고자 함.

## 1.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기준(안)

- 복지 분야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조재환·이한성, 2013). 다음과 같은 사업은 포괄보조금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임.
  - 소규모 유사, 중복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업
  - 사업 시행효과가 지역적인 사업
  - 성과지표 산출이 용이한 사업
  - 예산배정에서 법정 공식주의를 적용하기가 용이한 사업

### 가. 소규모 유사, 중복사업

- 기초 지자체 복지관련 부서 간 조정이 용이한 소규모 보조금 사업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적합함.
  - 사업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통합효과가 높은 사업이 있음.
    - 유사한 사업을 한 부서의 사업으로 이전함으로써, 다른 부서는 다른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기획 및 관리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중앙부처간 조정이 용이하며 지자체의 저항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예) 장애인 분야, 기초지자체 5천만원 미만, 소수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

### 나. 지자체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보장되는 사업

- 지자체 고유 업무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사업들이 적합함.
  - 지방에서 복지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적합함.

- 전국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특정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움.
  - 대상자선정 기준 및 급여수준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한됨.

#### 다. 사업 시행효과의 지역성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가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역적인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사업투자에 따른 혜택과 효과가 해당 지역에 국한되어 사업추진 인센티브가 강화될 수 있음.
- 사업투자 효과가 다른 지역에 미치는 외부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특정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인센티브가 약함.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무임승차할 유인이 발생함.

#### 라. 성과지표 산출 가능성

- 성과측정이 용이한 사업(예: 취업, 소득, 만족도)
  - 정부의 재정운용방식이 투입 및 과정통제에서 산출 중심의 성과관리로 변화되고 있음.
  -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관리가 요청됨.
  - 가급적 성과측정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포괄보조 대상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재량권을 부여하되,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마. 법정 공식주의 적용

- 재원배분 및 추가재원 배분과 관련하여 공식에 기반을 둔 재원배분이 가능한 사업들이 적절함.
  - 재원배분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정 공식에 따라 재원배분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포괄보조금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입장에서 포괄보조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에 예산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함.
  - 법정 공식에 따라 포괄보조금을 연차별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운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사업을 실행하는 서비스 기관에서도 사업운영의 불확실성이 감소되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중앙정부는 포괄보조금방식 사업의 유형을 확정하고, 각 사업군 별 포괄보조금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정 공식주의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을 자동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식이 필요함.
- 법정공식주의 적용가능성은 향후 포괄보조금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군을 대상으로 예산배정산식을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2.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으로 부적합한 사업

-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업은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으로 부적합한 사업임.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간 사업이나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예) 공공임대주택공급, 장기전세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영구임대주택공급 등

○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제외함.

- 예) 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군은 현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의 사업운영 자율성이 제한적인 사업은 제외함.

- 국고보조율이 100% 로, 중앙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함.
- 대상자선정 및 지원수준 및 규모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운영되거나, 전국단위의 표준화가 필요한 사업: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급여내용과 수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업운영상의 지역 자율성이 낮음.

- 예)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분야 사업, 장기요양과 관련된 급여, 건강/의료분야 사업 중 의료비 지원 사업,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및 유아학비 지원 사업 등

○ 사업집행체계가 상이하여 지자체단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포괄보조금 방식 사업군에서 제외시킴.

- 중앙정부에서 민간기관에 국고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형태로, 지자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율적 사업운영이 제한적임.

- 예) 시니어창업지원

- 부처별로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전달체계 통합 또는 사업 통합 및 사업간 연계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포괄보조금방식 사업 운영이 제한적임.

- 예) 드림스타트,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

□ 포괄보조금방식 대상 사업 부적합사유 및 제외 사업리스트는 <부록 1>에 제시함.

### 제3절 포괄보조금방식 적절성 평가들을 이용한 사업군 도출(안)

- 본 연구에서 포괄보조금방식 적절성 평가들은 다음과 같음.
  - 대상자와 기능의 유사성/보완성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의 목표와 기능의 유사성/보완성
  - 지자체의 자율성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에서 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공통 성과지표 활용가능성
    - 성과지표가 유사한지 여부
  - 사업규모
    - 지방의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규모의 사업군은 포괄보조금방식 대상 사업군에서 제외
  
- 위 기준이외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포괄보조금방식 대상 사업군을 유형화
  - 동일한 대상 집단의 사업을 블록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양한 대상 집단의 사업을 한 유형으로 블록화하는 경우, 대상자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사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취약한 대상집단의 사업이 축소되어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동일대상 동일기능 사업군내에서 사업의 기능과 목적이 유사하지 않은 사업 또는 보완하여 연계하기 어려운 사업을 일차적으로 제외시킴(부록 1참조).
  
- 일차적으로 추출한 210개의 사업 중 포괄보조사업군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업과 기능/목적/집행체계가 상이한 사업, 지역의 자율성이 제한적인 사업 176개를 제외하였음.

□ 나머지 34개 사업과, 2장에서 자동 탈락되었으나, 추후 검토과정에서 기능상 유사성으로 인해 포괄보조사업군으로 포함된 2개 사업을 포함한 총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11개 포괄보조사업군을 유형화함(부록 1참조).

### 1) 독거노인 종합지원

□ 독거노인 종합지원사업군에 포함된 사업은 독거노인이라는 명확한 대상에 초점을 둔 특정화된 사업이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운영,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함.

- 독거노인 안전확인, 정서적 지원 등 유사한 목표를 지닌 사업
- 집행체계가 유사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함.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포괄보조금방식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범위를 폭넓게 포괄하여 사업운영을 진행함으로써, 욕구 단계가 심화되는 경우에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건강한 독거노인이 취약한 독거노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취약 독거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장기적으로 독거노인의 생활안전 증진, 정서적 고립감 해소, 지역사회 관계망 증진 등의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표 4-2> 독거노인종합지원 사업 내용 및 특성

사업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서울(50), 지방(70)	재원 일반
1		예산(백만원)	53,912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복지서비스 자원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서비스 제공 • 정기적인안전확인,보건복지서비스연계및조정, 생활교육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읍면동 -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시군구 [기타]시군구위탁기관 - 보장결정기관: (지자체)시군구 [기타]시군구위탁기관 - 제공기관: (지자체)시군구 [기타]시군구위탁기관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50	
2			예산(백만원)	4,760	재원	응급의료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 노인돌봄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365일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 및 구급</li> <li>•응급상황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시군구 사업팀</li> <li>-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시군구 사업팀</li> <li>- 보장결정기관: (지자체)시군구 사업팀</li> <li>- 제공기관: (지자체)시군구 사업팀</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동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운영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서울(50), 지방(70)	
3			예산(백만원)	6,587	재원	응급의료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 독거노인대상으로 맥내에 센서 (가스화재활동감지및응급호출버튼등)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li> <li>•취약독거노인대상으로 센서(가스 화재 활동감지 및 응급호출버튼 등)를 설치</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시군구</li> <li>-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시군구</li> <li>- 보장결정기관: (지자체)시군구</li> <li>- 제공기관: (지자체)시군구</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동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지원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서울(50), 지방(70)	
4			예산(백만원)	2,520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줘 외로움에 의한 독거노인고독사 및 자살 예방</li> <li>•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줌</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기타)사업수행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li> <li>- 조사/심사기관: (기타)시, 구 독거노인 돌봄 담당부서</li> <li>- 보장결정기관: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li> <li>- 제공기관: (기타)사업수행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동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총예산						67,779

## 2)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지원”

- 복지관련 유사대상 및 유사기능별 사업군 교차표(〈표 2-7〉)에서 1개로 묶이는 사업들 중에서, 기능이 유사하고 전달체계가 유사한 정보화 교육 분야의 사업들은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전환 가능함.
  - 고령층정보화교육, 온라인정보화교육, 장애인정보화교육,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이 본 사업군에 해당함.
  
- 시도 단위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노인, 장애인,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컴퓨터/인터넷 활용능력 교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님.
  
- 대상자 및 도농지역의 분포가 지역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방문 교육, 온라인 교육 등 지역별 맞춤형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 능력이라는 특정화된 전문지식을 습득, 활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점에서 유사한 성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
  -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일부 성취목표를 상이하게 조정할 수 있음.

〈표 4-3〉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지원”사업 내용과 특성

사업명	고령층정보화교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고보조율(%)	
					50	
1			예산(백만원)	522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에게 IT활용능력을 제공하여 수혜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지원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및 세대간정보격차해소</li> <li>•고령층정보화교육기관운영을 통한 집합교육, 어르신IT봉사단 방문교육, 어르신정보화제전개최</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지자체) 시도 [기타] 봉사단, 일자리교육 기관</li> <li>- 조사/심사기관: (지자체) 시도 [기타] 한국정보화진흥원</li> <li>- 보장결정기관: (지자체) 시도 [기타] 한국정보화진흥원</li> <li>- 제공기관: (지자체) 시도 [기타] 봉사단, 일자리교육 기관</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온라인정보화교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고보조율(%)	
					50	
2			예산(백만원)	790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무선 인터넷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평생교육사이트 ‘배움나라(estudy)’를 활용하여 대국민 정보화역량 강화</li> <li>- 스마트사회에서 생산적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시민양성 및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li> <li>•평생교육사이트 ‘배움나라(www.estudy.or.kr)’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활용, 웹디자인 등 83개 정보화교육과정 제공</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공공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li> <li>- 조사/심사기관: (공공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li> <li>- 보장결정기관: (공공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li> <li>- 제공기관: (공공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기타] 교육기관</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장애인정보화교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고보조율(%)	
					50	
3			예산(백만원)	5,673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li> <li>- 장애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교육사업지원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li> <li>- 방문정보화교육 및 IT긴급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들의 정보화교육 및 정보사회 동참확대</li> <li>- IT에 소질이 있는 장애인에게 IT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를 통한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도모</li> <li>•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li> </ul>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기타]방문교육(한국정보화진흥원), 집합교육(IT전문교육기관 및 집합교육기관) - 조사/심사기관: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 보장결정기관: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 제공기관: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기타]방문교육(한국정보화진흥원), 집합교육(IT전문교육기관 및 집합교육기관)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sup>주)</sup>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고보조율(%)	
				50	
4		예산(백만원)	955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결혼이민자들이 정보화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 사업지원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IT방문지도사를 양성 ,맞춤형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대상집합정보화교육, 다문화가정방문정보화교육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 조사/심사기관: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 보장결정기관: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 제공기관: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기타]: 교육기관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총예산					7,940

주: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사업은 동일대상 동일기능내 사업군내에 사업수가 1개로써 포괄보조대상에서 자동탈락되었으나, 동일부처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기능상 유사사업으로 분류되어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군으로 포괄하였음

### 3)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대상사업 추가 안)

□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영양, 재활, 치매, 안과질환, 전립선질환의 관리·예방 및 치료 등 다양한 건강생활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노인틀니,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립선 사업을 본 사업군에 포괄함.

○ 지역사회 기반을 중심으로 질병 관리,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님.

□ 시군구 단위 지자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대상자 분포가 지역별로 상이하고, 도농 간 보건소 접근성이 상이하어, 방문치료 및 관리, 예방교육 등을 병행하여 맞춤형 질환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측정하는 점에서 유사한 성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등록관리시범사업이 있음.
  - 본 시범사업의 목적은 고혈압/당뇨병환자에게 의료비지원, 교육 및 알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알림상담 서비스 제공은 지역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함.
  - 추후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표 4-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대상사업 추가) 내용과 특성

사업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50	
1		예산(백만원)	99,168	재원	건강증진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에 기여 •치매관리: 노인, 영양플러스: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장애인재활서비스: 장애인, 철분제 및 엽산제 제공: 입산부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시군구 보건소 - 제공기관: (지자체)시군구 보건소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노인들니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50	
2		예산(백만원)	13,417	재원	건강증진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완전의치, 부분의치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보건소 - 조사/심사기관: (지자체)보건소 - 보장결정기관: (지자체)보건소 - 제공기관: (민간) 의료기관, (지자체)보건소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중	상		
총예산					14,152

82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명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100	
3		예산(백만원)	1,139	재원	건강 증진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저소득층 노인인 대한 정밀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로, 안질환의 조기발견/적기치료를 통한 실명예방 및 시력유지를 위한 •노인 안검진, 백내장 등 개안수술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보건소 - 조사/심사기관: (지자체)보건소 - 보장결정기관: (지자체)보건소 - 제공기관: (민간)한국실명예방재단 [기타]: 한국실명예방재단( <a href="http://www.kfpb.org">http://www.kfpb.org</a> ) : 의료 비 지급, 검진기관 : 안검진 및 개안수술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서울(30), 지방(50)	
4		예산(백만원)	11,649	재원	건강 증진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 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지원(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 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시군구 보건소 - 조사/심사기관: (지자체)보건소 - 보장결정기관: (지자체)보건소 - 제공기관: (지자체)보건소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50	
5		예산(백만원)	200	재원	건강 증진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 질환의 조기진단 및 예방관리 교육·홍보 •보건소, 노인복지관 대상 전립선 관리 교육, 도서지역 전립선 무료검진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보건소 - 조사/심사기관: (지자체)보건소 - 보장결정기관: (지자체)보건소 - 제공기관: (기타)한국전립선관리협회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총예산					12,988

#### 4) 일자리제공사업

□ 저소득층 일자리제공사업을 통합 운영함.

○ 노인일자리 및 일자리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공익성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함.

○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이 이에 해당함.

□ 지역 노동시장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시군구 단위 또는 시도단위의 지자체에서 통합 관리함.

□ 취업률, 취업유지율 등 유사한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관리가 용이한 사업임.

〈표 4-5〉 일자리제공사업 내용과 특성

사업명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부처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율(%)	
					50	
1			예산(백만원)	7,510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li> <li>•임금(근로시간x시간당단가+유급주휴일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간식비)</li> <li>•4대보험가입</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사무소</li> <li>-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시군구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자치단체</li> <li>- 보장결정기관: (중앙행정기관)</li> <li>- 제공기관: (지자체)시군구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자치단체</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노인일자리지원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서울(30),지방(50)	
2			예산(백만원)	305,190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li> <li>•월 36 ~ 40시간 내의 활동, 월 20만원 보수(사업유형 및 활동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민간)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기타]: 지자체 시군구</li> <li>- 조사/심사기관: (민간)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기타]: 지자체 시군구</li> <li>- 보장결정기관: (민간)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기타]: 지자체 시군구</li> <li>- 제공기관: (민간)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기타]: 지자체 시군구</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총예산						312,700

### 5)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지원

-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지원 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 보급 및 통신중계서비스 사업을 포괄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청각, 언어 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문자 및 수화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연계/통합하여 사업 운영함.
-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보급사업과 통신중계서비스 사업이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지원 사업에 해당 함.
- 지자체 시도단위에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음.
  - 통신중계서비스의 경우, 사업내용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함.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증진을 성과지표로 구성이 가능함.

〈표 4-6〉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방송 지원 내용과 특성

사업명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보급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고보조율(%)	
					50	
1			예산(백만원)	2,970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 •구입 비용의 80%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은 90% 지원)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 - 조사/심사기관: (지자체)17개 광역시도 - 보장결정기관: (지자체)17개 광역시도 - 제공기관: (지자체)17개 광역시도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중	중			

사업명	통신중계서비스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고보조율(%)	
					기금출연	
2			예산(백만원)	1,500	재원	방송발전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화)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li> <li>•중계사(문자, 수화)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손말이음센터</li> <li>- 조사/심사기관: 해당없음</li> <li>- 보장결정기관: 손말이음센터</li> <li>- 제공기관: 손말이음센터</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동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중			
총예산						4,470

## 6) 아동언어지원서비스

□ 아동언어지원서비스는 비장애부모의 아동과 다문화가족의 아동에게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부모의 특성상 아동의 언어발달이 지체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

□ 시군구단위의 지자체에서 사업 운영이 가능함.

○ 지역에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함.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언어발달과 같은 유사 성과목표 설정이 가능함.

〈표 4-7〉 아동언어지원서비스 내용과 특성

사업명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부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율(%)	
				50, 70	
1		예산(백만원)	6,424	재원	여성발전기금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li> <li>•언어발달상태 평가, 언어교육 실시</li> </ul>				

86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조사/심사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보장결정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공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언어발달지원사업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67	
2		예산(백만원)	1,930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감각적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역량 강화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읍면동 - 보장결정기관: (지자체)시군구 - 제공기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중		
총예산					8,354

### 7)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미술/음악/놀이 치료와 같은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운영 가능함.
- 두 사업의 집행체계가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나뉘어 있으나,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혹은 교육청 중심의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음.
- 지역에서 장애아동 대상의 재활치료서비스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함.
- 재활서비스의 만족도를 이용한 성과지표 이용이 가능함.

〈표 4-8〉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내용과 특성

사업명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서비스		부처	교육부	국고보조율(%)			
			예산(백만원)	38,400	해당없음			
1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li> <li>•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치료센터 및 지정 유관기관(병원, 의원, 복지관)을 통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교육청</li> <li>- 조사/심사기관: 교육청</li> <li>- 보장결정기관: 교육청</li> <li>- 제공기관: 교육청</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동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총예산							0(전체 지방비)	

사업명	발달재활서비스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예산(백만원)	60,811	67			
2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li> <li>• 급여지급,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 등</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li> <li>-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읍면동</li> <li>- 보장결정기관: (지자체)시군구</li> <li>- 제공기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동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총예산							72,458	

## 8) 청소년 대상 역량강화

-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활동지원, 17개 시도 지방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본 사업군에 해당됨.
-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험활동 지원을 목표로 함.
- 지자체 시도단위에서 사업 운영이 가능함.
  -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운영이 가능함.

□ 청소년 활동지원 서비스 만족도를 유사 성과지표로 설정 가능함.

〈표 4-9〉 청소년 대상 역량강화 지원 내용과 특성

사업명	청소년국제교류		부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율(%)	
					40	
1			예산(백만원)	4,519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청소년교류를 통한 국가간 우의 증진 및 협력기반 조성,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개발 지원 •사업추진기관 위탁운영(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별로 민간단체에 사업비 지원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민간)청소년교류센터 - 조사/심사기관: (민간)청소년교류센터 - 보장결정기관: (민간)청소년교류센터 - 제공기관: (민간)청소년교류센터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청소년활동지원		부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율(%)	
					40	
2			예산(백만원)	5,018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지자체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조사/심사기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보장결정기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제공기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17개시도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지원		부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율(%)	
					30	
3			예산(백만원)	3,068	재원	청소년 육성기금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 전달과 지역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각 사업 지원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공공기관)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조사/심사기관: (공공기관)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보장결정기관: (공공기관)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제공기관: (공공기관)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총예산						12,605

###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이 포함됨.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자 선정이 가능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함.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율 및 상담프로그램의 만족도 등과 같이 공통의 성과 목표 설정이 가능함.

〈표 4-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과 특성

사업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세부사업: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부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율(%)	
					50~70	
1			예산(백만원)	4,249	재원	청소년 기금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유무선상담,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조사/심사기관: 해당사항없음 - 보장결정기관: 해당사항없음 - 제공기관: (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세부사업: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부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율(%)	
					50	
2			예산(백만원)	6,068	재원	청소년 기금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 정서적 지지 제공 •유무선 상담,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조사/심사기관: 해당사항없음 - 보장결정기관: 해당사항없음 - 제공기관: (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90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명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세부사업: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부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율(%)	
				100	
3		예산(백만원)	1,171	재원	청소년 기금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사이버상담 운영</li> <li>•유무선 상담,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li> <li>- 조사/심사기관: 해당사항없음</li> <li>- 보장결정기관: 해당사항없음</li> <li>- 제공기관: (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총예산					25,530

10)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산림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함.

○ 산림서비스 관련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간 유사성 높음.

□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함.

□ 일자리 제공률, 취업률 등 유사한 성과지표 이용이 가능함.

<표 4-11>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내용과 특성

사업명	산림서비스도우미	부처	산림청	국고보조율(%)	
				60	
1		예산(백만원)	14,640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li> <li>•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학교숲코디네이터,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일자리 DB구축 지원</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기타]국유림: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지자체(시군구)</li> <li>-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사유림: 지자체(읍·면·동, 시·군·구)</li> <li>- 보장결정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사유림: 지자체(읍·면·동, 시·군·구)</li> <li>- 제공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사유림: 지자체(읍·면·동, 시·군·구)</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산림재해모니터링	부처	산림청	국고보조율(%)	
				60	
2		예산(백만원)	9,869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보호 분야(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각종 산림재해 예방</li> <li>-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li> <li>•인건비, 유류비 지원</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소속기관)지방산림청 [기타]사유림:지자체(읍·면·동, 시·군·구) [기타]국유림: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지자체(시군구)</li> <li>-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사유림: 지자체(읍·면·동, 시·군·구)</li> <li>- 보장결정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사유림: 지자체(읍·면·동, 시·군·구)</li> <li>- 제공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사유림: 지자체(읍·면·동, 시·군·구)</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공공산림가꾸기	부처	산림청	국고보조율(%)	
				60	
3		예산(백만원)	33,182	재원	농특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등을 산림가꾸기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 확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을 제고</li> <li>•일반인부 및 기술인부 인건비 지원, 기술교육지원</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소속기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기타]사유림:지자체(읍·면·동, 시·군·구)</li> <li>-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사유림: 지자체(읍·면·동, 시·군·구)</li> <li>- 보장결정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사유림: 지자체(읍·면·동, 시·군·구)</li> <li>- 제공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사유림: 지자체(읍·면·동, 시·군·구)</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총예산					57,691

### 11) 주거약자시설개선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개보수 및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을 본 사업의 목적으로 함.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개선 및 시설 개보수 자금 용자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함.
- 지자체별로 상이한 주거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개선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함.
  - 농어촌 및 대도시 특성에 따라 용자지원 규모, 주거시설 개선 내용 및 대상자 선정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함.

92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에서 사업 운영이 가능함.

□ 최저주거기준 충족률 및 주거시설 개선정도, 주거안전 증진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 가능함.

〈표 4-12〉 주거약자시설개선지원 내용과 특성

사업명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부처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율(%)	
					50, 70	
1			예산(백만원)	50,000	재원	일반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급한 시설개선사업 지원 •발코니샷시, 외부창호, 저층승강기공사, 복지관증개축 등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사업주체(지자체, LH) -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사업주체(지자체, LH) - 보장결정기관: 국토교통부 - 제공기관: (지자체)사업주체(지자체, LH)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주거환경개선자금		부처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율(%)	
					없음	
2			예산(백만원)	125,000	재원	주택 기금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용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용자(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및 연립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등)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읍면동 (기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읍면동 (기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 보장결정기관: (지자체)읍면동 (기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 제공기관: (지자체)읍면동 (기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중	상			

사업명	주거약자개량자금지원 (세부사업: 주거환경개선자금)		부처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율(%)	
					없음	
3			예산(백만원)	2,600	재원	주택 기금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 주택을 개조하려는 주거약자와 임대사업자에게 개조비용 용자 및 지원 •주택개조 비용 용자(호당 600만원), 주택건설시 호당 150만원 용자					
사업수행 체계	- 신청접수기관: (민간)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시군구청 - 보장결정기관: (민간)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 제공기관: (민간)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중	상			

사업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	부처	환경부	국고보조율(%)	
				80	
4		예산(백만원)	2,112	재원	특별회계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물출수 등 수도물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연도 강관 사용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도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수급대상자 소유 건축물 및 영구임대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을 지원</li> <li>•급수시설인 옥내급수관 갱생 또는 교체</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시군구; (기타) 수도사업소</li> <li>-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시군구; (기타) 수도사업소</li> <li>- 보장결정기관: 환경부</li> <li>- 제공기관: (지자체)시군구; (기타) 수도사업소</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부처	환경부	국고보조율(%)	
				없음	
5		예산(백만원)	1,000	재원	특별회계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li> <li>•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친환경 주거개선</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시군구 주민센터</li> <li>- 조사/심사기관: (공공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li> <li>- 보장결정기관: 환경부</li> <li>- 제공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사업명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sup>주)</sup>	부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50	
6		예산(백만원)	1,710	재원	특별회계
사업목적 및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li> <li>•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li> </ul>				
사업수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기관: (지자체)읍면동</li> <li>- 조사/심사기관: (지자체)읍면동</li> <li>- 보장결정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li> <li>- 제공기관: (지자체)시군구</li> </ul>				
영역별 평가	유사성	지자체자율성	공통성과지표적용가능성	비고	
	상	상	상		
총예산					182,422

주: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2장에서 추출한 210개 사업군에서 제외되었으나, 기능상 유사한 사업으로 본 사업군에 포함하였음.





## 제5장

###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



# 5

##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은 예산지원방식의 변경을 넘어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역할변화와 관련된 행정관리 및 평가기법의 개발을 필요로 함. 따라서 본 장에서는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사업성과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책임분담 및 역할의 개편이 요구됨.
- 지역별, 사업군별 포괄보조금 예산책정을 위한 자원배분 방식의 개발이 필요함.
  - 예산배정 산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함.
  - 투명하고 객관적인 예산배분 방식은 예산배정금액의 추정을 통한 사업운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기여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기획 및 운영, 평가능력의 개발이 필요함.
  - 지자체의 과도한 사업운영 부담 감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개편이 필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운영 책임성을 위해 포괄보조 사업 영역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개편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1.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분담

- 기존의 특정보조금 지급방식은 중앙정부가 개별 사업을 심의, 승인하는 등 사업 운영 과정 및 성과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음.
- 각종 복지사업의 급증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사업 심의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전략적 관리기능 수행이 제약됨.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업 선정, 심의, 승인 등 사업운영의 주

요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양됨.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의 복지계획을 심사·평가, 전략 목표 설정, 사업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방식으로 분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사업관리 및 성과달성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요청됨.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운영 및 성과달성 책임에 대한 분담이 요구됨.
    - 지방정부의 역량, 재정책임성에 대한 감독권, 사업권한, 재정관리 권한 등이 포함됨.
  - 지방의 자율성 및 재정분권 효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 단위를 설정해야 함.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운영단위를 시도로 할 경우, 시도의 기획역량이 강화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는 시군구의 계획을 시도가 취합하는 형식임.
-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선호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도의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여 제도 정립 필요함.
  -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선호도, 사업성과 달성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식, 사업추진역량,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관한 분석이 요청됨.
  -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설정 및 광역과 기초지자체간의 관계 설정 요구됨(사업권한, 재정관리 권한, 성과에 대한 책임).

## 2.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 가. 성과관리제도의 필요성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사업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관리를 통해 목표달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국고보조사업의 급증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업관리 부담이 급증한 것에서도 비롯됨.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업을 엄밀하게 심의, 선정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중앙정부는 포괄보조금 제공으로 사업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을 통해 복지사업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의 한 형태인 포괄보조금 지원제도가 반드시 성과계약을 동반하는 것은 아님.
  - 성과계약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계약방식 중의 하나임. 성과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계약이 있을 수 있음(예: 규정준수 감사 등 과정/통제 중심의 전통적인 계약관리).
  - 그러나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성과계약을 통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 포괄보조금을 이용하여 각 사업군별, 사업군내 사업별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운영의 필요성을 넘어서 특정 사업군 또는 사업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예

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는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와 병행할 경우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기본 취지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일상적인 사업운영이 아니라, 전략적 기획 및 평가 등의 과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임.
  - 사업심의, 승인 등의 규제/통제를 중심으로 한 과정통제(process control)가 아닌,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지자체에 이양하되 성과관리를 통해 산출통제(output control)를 수행하는 것임.
- 사업운영의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되, 성과관리를 통해서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함.
  - 성과관리는 시군구에서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게도 일관된 정책으로 적용되어야 함.
  - 중앙정부는 사전에 성과지표 등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평가 장치를 마련함.

#### 나. 성과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따라서 성과보너스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사업기관에서 성과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성과 인센티브를 책정할 필요도 있음.
  -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성과 달성이라는 부담을 새롭게 지는 지자체/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음.
  -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의 성격을 지님.
    -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지급받듯이

지자체의 경우에도 성과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받음.

○ 성과인센티브의 유형은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목표성취 수준에 따른 상이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가능함.

- 예) 미국 위스컨신 주 TANF 사업의 경우, 사업기관의 성취수준에 따라 재계약 우선권, 총액예산의 1%~5%를 성과보너스를 제공함(Choi and Heinrich, 2006: 196).

□ 성과인센티브를 통해 성과달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성과를 달성한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명시화함으로써 지자체와 사업기관이 혁신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함.

#### 다. 성과관리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

□ 과도한 성과관리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과정관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미국 TANF(Temporary Aids to Needy Families) 포괄보조금 운영사례 연구에 따르면 일부 주정부(예: 위스컨신 주정부)는 TANF 사업기관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성과관리를 주로 활용함(Choi and Heinrich, 2006: 195-204).

○ 시의회 등 감사 결과, 성과 위주 관리의 한계, 부작용이 발견됨.

○ 과도한 성과관리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남.

- 예) 취업률 지표 달성을 위해 취업에 유리한 참여자 선정(creaming), 취업자 사업 참여기간 관리(parking)

○ 성과관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정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성과지표의 구성에서 과정관리 성격의 지표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애초에 의도했던 지자체, 기관의 자율성, 재량권이 점차 약화되는 결과를 보임. 사업운영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이중적 책임이 강화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음.

- 또한 특정사업의 결과를 성과관리제도 자체로 인한 영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예) 자활사업의 경우 지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업의 결과가 달라짐.
- 따라서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성과관리와 과정 관리의 균형을 통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개발/개편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 이 요청됨.

### 3. 포괄보조금 예산배분 산식의 개발

- 지자체 세입확보 안정성위해 재원배분과정 투명성 확보해야 함.
  - 지자체, 사업기관이 사전에 대략적인 예산금액을 파악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함.
- 재원배분시 예산 총액을 줄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움.
  - 재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재정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도 방법. 적어도 예산 총액 수준을 최소한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자체 자율편성으로 인해 취약계층 복지 축소가능성 있을 경우, 사전에 지원 대상 및 범위 명시 가능

#### 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기획 및 운영, 평가능력의 개발

- 지자체의 과도한 사업운영 부담 감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사업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 제공 필요함.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
  - 블록(Block)으로 묶여 있는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조직체체계가 선행되어야 함.
    -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행정조직체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유사 중복 사업간 사업조정은 매우 제한적인 것임.
  - 지역의 기획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발전협의체 또는 지역복지협의체와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기획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5. 법제도 정비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된 법 도입 및 기존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지방비 부담방식, 보조금 지불정산,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성과관리, 인센티브 및 벌칙에 대한 규정 도입이 필요함.

#### 6. 점진적 확대

- 사업 운영 3년 후 사업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포괄보조금 방식 확대 안 점검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시행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가 제도자체의 문제인지, 제도설계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재원의 문제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2014).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www.mosf.go.kr
- 김현아(2008). 포괄보조금적 성격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4). 201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매뉴얼 (2014년 실적 평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4).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송미령, 권인혜(2011).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두섭(201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천과정과 특징. 지방재정, Vol. 2014(3).
- 이순배, 백철우(2011).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포괄보조금의 교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포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3권2호. pp.91~114.
- 이재원, 김은정, 김준현, 김교원, 김유리, 김지혁 외(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포괄보조 전환방안 마련. 부산: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정희, 박경돈(2010). 복지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나남.
- 조기현(2012).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용실태와 발전방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한국 지방재정논집 17(1): 41-73.
- 조재환, 이한성(2013). 지방농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농림수산 포괄보조금제 운용 방안. 농촌계획 19(3):145-155.
- Choi Y. and Carolyn Heinrich(2006).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Performancebased Contracts for Public Welfare Services. *In Public Service Performance*, George. Boyne, Kenneth, Meier, Laurence O'Toole and Richard Walker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O(1995). *Block Grants Issues in Design Accountability Provisions*, GAO/IPE-82-8.
- Office of Community Services (september 17, 2014). *SSBG Fact Sheet* (<http://www.acf.hhs.gov/programs/ocs/resource/social-services-block-grant-ssbg-fact-sheet>)에서 2014년 9월 25일 인출

- US Department of Health & Urban Development (May 2014). *Basically CDBG*.  
<https://www.hudexchange.info/resource/19/basically-cdbg-training-guidebook-and-slides> 에서 2014년 10월 22일 인출
- U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2014). *CDBG Expenditure Reports (PY02-PY12)*.  
(<https://www.hudexchange.info/manage-a-program/cdbg-expenditure-reports>)  
에서 2014.10.27. 인출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9, Jan 1). *SSBG Legislation Uniform Definition of Services*.  
(<http://www.acf.hhs.gov/programs/ocs/resource/uniform-definition-of-services>)  
에서 2014. 9. 26 인출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9, Jan 1). *SSBG Q & As General and Supplemental Information*.  
(<http://www.acf.hhs.gov/programs/ocs/resource/ssbg-questions-answers>)  
에서 2014. 9. 26 인출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Social Services Block Grant Program Annual Report 2010*. Washington, DC: Walter R. McDonald & Associates, Inc.  
([http://www.acf.hhs.gov/sites/default/files/ocs/ssbg\\_annual\\_report\\_2010\\_finalv2.pdf](http://www.acf.hhs.gov/sites/default/files/ocs/ssbg_annual_report_2010_finalv2.pdf))  
에서 2014. 9. 26 인출
- Whitehouse (2008, Sep 06).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ocial Services Block Grant Assessment*.  
(<http://www.whitehouse.gov/sites/efault/files/omb/assets/omb/expectmore/detail/10003503.2005.html>)  
에서 2014. 9. 27 인출

# 부록 <<

## 1. 포괄보조금 검토 대상 사업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제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고령자/노인	건강/의료	보건 복지부	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등록관리시범사업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감면	추후 포괄가능
			<b>노인안검진 및 개인수술</b>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감면	<b>노인성질환관리 사업</b>
			<b>치매치료관리비지원</b>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감면	
			<b>전립선등노인성질환예방관리</b>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고령자/노인	성인돌봄	보건 복지부	(장기요양)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일반회계	사회보험	현금	자율성 제한, 중앙정부 표준화사업
			(장기요양)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일반회계	사회보험	서비스	
			(장기요양)시설급여	일반회계	사회보험	서비스	
			(장기요양)재가급여	일반회계	사회보험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특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바우처	
			<b>노인돌봄기본서비스</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b>특기노인응급전돌보미사업</b>	응급의료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b>특기노인u-care시스템 운영</b>	응급의료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b>특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고령자/노인	자활/고용	보건 복지부 행정 자치부 중소 기업청	<b>노인일자리지원</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b>일자리지원사업</b>
			<b>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지원사업</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시니어창업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재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고령자/노인	역량/참여	보건복지부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기능 상이
		방송통신위원회	노인복지 민간단체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기능 상이
고령자/노인	정보통신/방송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소의 계층방송점근권보장(난청노인용수신기)	방송통신발전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기능 상이
		미래창조과학부	<b>고령층정보보호교육</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b>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지원</b>
다문화/북한이탈주민/외국인	정보통신/방송	미래창조과학부	<b>온라인정보보호교육</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	<b>신소의 계층정보화교육 (210개사업군에서 제외된 사업임)</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장애인	정보통신/방송	미래창조과학부	<b>장애인정보보호교육</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민간경상보조 100%
		미래창조과학부	<b>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보급</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물	
장애인	정보통신/방송	방송통신위원회	<b>통신중계서비스</b>	방송통신발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민간경상보조 10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소의 계층방송점근권보장(자막방송수신기)	방송통신발전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영유아	건강/의료	보건복지부	방송소의 계층방송점근권보장(화면 해상방송수신기보급)	방송통신발전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중앙정부 표준화 사업 자율성 제한
			장애인양아동의료비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감면	
영유아	건강/의료	보건복지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동영양아의료비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사회서비스	감면	중앙정부 표준화 사업 자율성 제한
			신생아의난청진단의료비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사회서비스	감면	
영유아	건강/의료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국민건강증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자/기능상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영유아	건강/의료	보건복지부	영유아건강검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자/기능상이
			취학아동실명예방	국민건강증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제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취약가족	출산/보육	보건 복지부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감면			
			임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감면	중앙정부 표준화 사업 자율성 제한		
		영유아	출산/보육	보건 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임양아동양육수당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감면	
					임양비용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감면	
					임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0-5세보육료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중앙정부 표준화 사업 자율성 제한
					가정양육수당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장애아동임양양육보조금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영유아	출산/보육	여성 가족부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포괄보조 운영중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기능 상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중앙정부 표준화 사업		
			만3~5세 유아학비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방과후보육료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집행체계 상이/자율성 제한		
			방과후돌봄서비스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재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아동/청소년	건강/의료	환경부	어린이건강보호종합대책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기능 상이
		여성 가족부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여기능해소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보건 복지부	통합사례관리(드림스타트)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기능/집행 체계 상이
아동/청소년	교육/문화	여성 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농림수산 식품부	학교우유급식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사회서비스	현물	
		여성 가족부	<b>학교 밖 청소년 지원</b>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b>학교 밖 청소년 지원</b>
			<b>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b>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b>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b>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아동/청소년	역량/참여	여성 가족부	<b>청소년국제교류</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b>청소년대상 역량강화 지원</b>
			<b>청소년활동지원</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여성 가족부	<b>17개 시도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b>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재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제외대상 사유 중앙정부 집행체계 상이					
		교육부	학생안전강화학교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물						
			WEE 클래스, 센터, 스쿨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여성 가족부	보호/안전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소년육성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기능/집행 체계 상이			
					가출청소년보호지원센터운영지원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운영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상담운영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상담운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법무부	보호/안전	학대피해아동전담치유보호시설설치운영	학대피해아동전담치유보호시설설치운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중앙정부 사업 자율성 제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대학생	교육/문화	미래창조 과학부	국가우수장학생(인문사회계)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통합운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교육부	국가근로장학금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든든하자금대출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융자						
농림수산 식품부	교육/문화			일반상환하자금대출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융자					
				농촌출신대학생하자금융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사회서비스	융자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재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저소득층	소득보장	고용 노동부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두루누리)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감면	중앙정부 표준화 사업 자율성 제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근로복지진흥 기금	사회서비스	용자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근로복지진흥 기금	사회서비스	용자	
저소득층	건강/의료	보건 복지부	국가암검진사업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감면	중앙정부 표준화 사업 자율성 제한
			암환자의료비지원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감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등지원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감면	
			재가암관리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일몰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저소득층	자활/고용	고용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희망리본'과 통합 집행체계 상이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b>산림서비스도우미</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b>산림재해모니터링</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b>공공산림가꾸기</b>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소상공인지원(용자)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사회서비스	용자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재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저소득층	주거/에너지/ 교통	산업통상 자원부	보금자리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물	
			사회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물	
			에너지취약계층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전력산업기반 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b>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물	
			<b>주거환경개선자금</b>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현금	
			<b>주거약자개발자금지원</b>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용자	
			<b>저소득층 육내담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b>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회서비스	현물	<b>주거약자시설 개선 지원</b>
			<b>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b>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b>농어촌강에민주택개조사업 (210개 사업군에서 제외됨)</b>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사회서비스	현물	
			국토 교통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현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현금	
		공공임대주택공급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장기전세주택공급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기존주택매입임대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영구임대주택공급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기존주택전세임대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저소득전세가구전세자금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현금	중앙정부 대규모 사업
		준주택지원(용자)		국민주택기금	사회서비스	용자	
		금융 위원회	저소득가구전세자금보증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사회서비스	현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보증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사회서비스	현금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재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취약가족	건강/의료	보건복지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사회서비스	감면	대상/기능 상이
		여성가족부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배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회서비스.01	서비스	대상/기능 상이
	교육/문화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집행체계 상이
		교육부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국고보조금 사업 아님
	역량/참여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일반회계	서비스	서비스	세부적인 대상/기능상이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일반회계	서비스	서비스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일반회계	서비스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기관	일반회계	서비스	서비스		
	보호/안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실종아동보호쉼터지원	일반회계	서비스	서비스	대상/기능 상이
			법률지원(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일반회계	서비스	서비스	
여성	자활/고용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여성새일센터 지정운영)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통합지원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여성발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여성창업지원	일반회계	서비스	현금	통합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일반회계	서비스	현금		
	보호/안전	여성가족부	여성기업판로지원	일반회계	서비스	서비스	중앙정부사업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의료비	여성발전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무로법률지원	여성발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운영지원	여성발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여성발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서비스	서비스	
성폭력피해자지원사업	아동여성안전지원연대 운영지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서비스	서비스	현금/현물		
		성폭력피해자 보호기금	서비스	서비스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재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장애인	건강/의료	보건 복지부	장애인진단및검사복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감면	기능 상이			
			장애인보호조기구교부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회계 국립재활원	사회서비스	현물 서비스				
	출산/보육	보건 복지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일반회계	공공부조	현금	기능 상이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일반회계	공공부조	서비스				
	교육/문화	교육/문화	문화체육 관광부	사람문화시설장애인편의시설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물	통합지원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교육부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기능 상이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다문화/탈북/ 외국인	자립/재활	보건 복지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감면	자율성 제한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자립/재활	자립/재활	보건 복지부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집행체계 상이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취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장애인보호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증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b>언어발달지원사업</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b>아동언어지원 서비스</b>
					<b>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b>	여성발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장애인	자립/재활	교육부 보건 복지부	<b>(특수교육대상자)치로지원서비스</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b>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b>			
			<b>발달재활서비스</b>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재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장애인	자활/고용	보건 복지부	증증장애인지역재활지원(훈련수당)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이용성 제한
			장애인지역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사회서비스	현금	
		고용 노동부	장애인지역능력개발지원(훈련수당)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사회서비스	현금	
			증증장애인지역고용(훈련수당)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사회서비스	현금	
		중소 기업청	장애대학생기업연수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공공부조	서비스	
			장애인창업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역량/참여	보건 복지부	장애인지역종합지원센터운영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이용성 제한
			저소득장애인지역장소제공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사회서비스	현금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사회서비스	현물	
			장애인활동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바우처	
여성 가족부	역량/참여	장애인거주시설이용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감면	대상/기능 상이	
		장애인복지일자리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장애인운전교육·장애인차량및순회교육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일반형 일자리 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발달장애공공후견 서비스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여성장애인이어울림센터	여성발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재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다문화/탈북/ 외국인	역량/참여	교육부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기능/집행 체계 상이		
		여성 가족부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청소년육성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여성발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사업	여성발전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농업/농촌	주거/에너지/ 교통	해양 수산부	도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물	기능 상이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주백개량자금지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특별/기타	특별/기타	해양 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기타	현금	대상 상이	
			농림수산 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기타	현금		
			보건 복지부	건강/의료	임원명령결핵환자의료비 및부양가족생계비지원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감면
					생애전환기간강진단(만40세, 만66세)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특수/기타	건강/의료	보건 복지부	알콜상담센터운영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기능상이		
			정신보건센터운영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노숙자등알코올중독자사례관리사업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	기능	부처	사업명	재원	제도	급여유형	제외대상 사유
	특별/기타	보건 복지부	원폭피해자지원	일반회계	기타	감면	대상/기능상이
			노숙인등복지지원	일반회계	기타	서비스	
			의사상자지원	일반회계	기타	서비스	
			한센인피해자지원	일반회계	기타	서비스	
			사할린한인지원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현금	
			사회복지중사자상해보험기입지원	일반회계	기타	감면	
		여성 가족부	일분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서비스	

## 2. 미국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사전 지출보고서 양식

**Part A. Expenditures and Provision Method**

OMB NO.: 0970-0234

EXPIRATION DATE: 07/31/2011

STATE:	FISCAL YEAR:	REPORT PERIOD:
Contact Person:	Phone Number:	
Title:	E-Mail Address:	
Agency:	Submission Date:	

Service Supported with SSBG Expenditures	SSBG Expenditures		Expenditures of All Other Federal, State and Local funds**	Total Expenditures	Provision Method	
	SSBG Allocation	Funds transferred into SSBG*			Public	Private
1 Adoption Services						
2 Case Management						
3 Congregate Meals						
4 Counseling Services						
5 Day Care—Adults						
6 Day Care—Children						
7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8 Employment Services						
9 Family Planning Services						
10 Foster Care Services—Adults						
11 Foster Care Services—Children						
12 Health-Related Services						
13 Home-Based Services						
14 Home-Delivered Meals						
15 Housing Services						
16 Independent/Transitional Living Services						
17 Information & Referral						
18 Legal Services						
19 Pregnancy & Parenting						
20 Prevention & Intervention						
21 Protective Services—Adults						
22 Protective Services—Children						
23 Recreational Services						
24 Residential Treatment						
25 Special Services—Disabled						
26 Special Services—Youth at Risk						
27 Substance Abuse Services						
28 Transportation						
29 Other Services***						
30 SUM OF EXPENDITURES FOR SERVICES						
31 Administrative Costs						
32 SUM OF EXPENDITURES FOR SERVICES AND ADMINISTRATIVE COSTS						

\* From which block grant(s) were these funds transferred?

\*\* Please list the sources of these funds:

\*\*\* Please list other services:

자료: US DHHS (2010). 『Social Services Block Grant Program Annual Report 2010』, p49.

## 2-1. 미국 SSBG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계획

**Part B. Recipients**

OMB NO.: 0970-0234

EXPIRATION DATE: 07/31/2011

STATE:
FISCAL YEAR:

Service Supported with SSBG Expenditures	Children	Adults			Total Adults	Total
		Adults Age 59 Years & Younger	Adults Age 60 Years & Older	Adults of Unknown Age		
1 Adoption Services						
2 Case Management						
3 Congregate Meals						
4 Counseling Services						
5 Day Care—Adults						
6 Day Care—Children						
7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8 Employment Services						
9 Family Planning Services						
10 Foster Care Services—Adults						
11 Foster Care Services—Children						
12 Health-Related Services						
13 Home-Based Services						
14 Home-Delivered Meals						
15 Housing Services						
16 Independent/Transitional Living Services						
17 Information & Referral						
18 Legal Services						
19 Pregnancy & Parenting						
20 Prevention & Intervention						
21 Protective Services—Adults						
22 Protective Services—Children						
23 Recreational Services						
24 Residential Treatment						
25 Special Services—Disabled						
26 Special Services—Youth at Risk						
27 Substance Abuse Services						
28 Transportation						
29 Other Services						
30 SUM OF RECIPIENTS OF SERVICES						

자료: US DHHS (2010). 『Social Services Block Grant Program Annual Report 2010』, p 50.

## 3. 미국 SSBG 사후지출보고서 예시(아리조나주)

CONTACT NAME Rod Huenemann		ARIZONA 2010 SSBG Post-expenditure Data								
AGENCY Arizona Department of Economic Security		EXPENDITURES				RECIPIENTS				
PHONE NUMBER (602) 542-6159		SSBG Allocation	TANF Transfer	Other Federal, State, & Local Funds	TOTAL EXPENDITURES	Children	Adults 59 years & younger	Adults 60 years & older	Adults of unknown age	TOTAL
EMAIL ADDRESS rhunemann@azdes.gov										
SERVICE										
1	Adoption Services									
2	Case Management	\$ 2,214,424		\$ 127,401,486	\$ 129,615,910		248	11,522	69,937	81,707
3	Congregate Meals	\$ 174,881		\$ 11,624,074	\$ 11,798,955		502	10,042		10,544
4	Counseling Services	\$ 59,349		\$ 8,286	\$ 67,635				206	206
5	Day Care—Adult	\$ 187,738		\$ 769,529	\$ 957,267		6	204		210
6	Day Care—Child	\$ 223,606		\$ 133,035,330	\$ 133,258,936	57,156				57,156
7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8	Employment Services	\$ 48,966		\$ 6,878	\$ 55,844				120	120
9	Family Planning Services									
10	Foster Care Services—Adult									
11	Foster Care Services—Child	\$ 3,439,853	\$ 20,898,650	\$ 84,642,854	\$ 108,981,357	25,435				25,435
12	Health-Related Services	\$ 135,619		\$ 334,846	\$ 470,465		46	296		342
13	Home-Based Services	\$ 1,245,861		\$ 8,142,795	\$ 9,388,656		585	6,473		7,058
14	Home-Delivered Meals	\$ 1,277,808		\$ 8,813,559	\$ 10,091,367		1,249	8,184		9,733
15	Housing Services	\$ 2,056,000		\$ 10,794,566	\$ 12,850,566		89	715	6,047	6,851
16	Independent/Transitional Living	\$ 311,755		\$ 2,261,267	\$ 2,573,022	1	300	966		1,267
17	Information and Referral	\$ 3,583		\$ 1,514,370	\$ 1,517,953		8,517	33,496	16,483	58,496
18	Legal Services	\$ 735,367		\$ 15,002,902	\$ 15,738,269		43	3,196	236	3,475
19	Pregnancy and Parenting									
20	Prevention and Intervention	\$ 335,486		\$ 6,612,643	\$ 6,948,129	1,439,179	1,127	7,472	4,014,541	5,462,319
21	Protective Services—Adult	\$ 1,413,876			\$ 1,413,876		1,490	4,998		6,488
22	Protective Services—Child									
23	Recreational Services									
24	Residential Treatment									
25	Special Services—Disabled	\$ 394,406		\$ 35,754,407	\$ 36,148,813	23	6,986	452		7,461
26	Special Services—Youth at Risk									
27	Substance Abuse Services									
28	Transportation	\$ 269,034		\$ 6,850,358	\$ 7,119,392		595	3,708	231	4,534
29	Other Services	\$ 678,249		\$ 6,199,547	\$ 6,877,796		703	5,341		6,044
<b>SUM OF SERVICES</b>		<b>\$ 15,205,861</b>	<b>\$ 20,898,650</b>	<b>\$ 459,769,697</b>	<b>\$ 495,874,208</b>	<b>1,521,794</b>	<b>22,486</b>	<b>97,365</b>	<b>4,107,801</b>	<b>5,749,446</b>
31	Administrative Costs	\$ 3,702,414								
<b>SUM OF EXPENDITURES FOR SERVICES &amp; ADMIN. COSTS</b>		<b>\$ 18,908,275</b>	<b>\$ 20,898,650</b>							

NOTES: Other services include: Community Services, Food Administration, Planning, Program Administration, Program Development, Volunteer Services.

자료: US DHHS (2010). 『Social Services Block Grant Program Annual Report 2010』, p 68.

### 3-1. DIS Add/Edit 설명서

#### Activity

#### Edit Activity

Save | Cancel

\*Indicates Required Field

Activity Owner:  
HAVERHILL, MA

Activity Status:  
Open

IDIS Activity ID:  
750

Completion Date:  
 [Select Date](#)  
(ex: mm/dd/yyyy)

\*Program Year:  
2009

Grantee/PJ Activity ID:

\*IDIS Project ID/Project Title:  
7/MULTI UNIT REHABILITATION (2009)

Initial Funding Date:

\*Activity Name:  
Rental Rehabilitation - 2010 -346 W Elm Stre

\*Indicate if activity will be funded with Recovery Grant Funds:(tip)  
 Yes  No

#### Activity

Program	*Activity Category (tip)	Ready to Fund	Funded	Setup Detail	Accomplishment	Completion Check
CDBG	14B - Rehab. Multi-Unit Residential	Yes	No	<a href="#">Edit CDBG</a>	<a href="#">Edit CDBG Accomp.</a>	<a href="#">Check CDBG</a>
ESG	None	No	No			
HOME	None					
No	No					
HOPWA	None	No	No			

\*Environmental Assessment:

Allow Another Organization to Access this Activity (tip)

EXEMPT

[Select Organization.](#)

#### Activity Description:

Five units requiring extensive rehabilitation to be brought up to local codes were rehabbed using CDBG funds.



Save | Cancel

### 3-1-1. IDIS 세부사항 설정 (set up detail) 설명서

Edit CDBG Setup Detail (Page 1)

**14B - Rehab; Multi-Unit Residential**

Save | Save and Continue | Cancel

---

**\* Indicates Required Field**

<b>Grantee/PJ Activity ID:</b>	<b>Activity Name:</b> Rental Rehabilitation - 2010 -346 W Elm Street	<b>Program Year/Project ID:</b> 2009/7
<b>IDIS Activity ID:</b> 750	<b>Activity Owner:</b>	<b>Project Title:</b> MULTI UNIT REHABILITATION

**\* National Objective:**  
LMH - LOW/MOD HOUSING BENEFIT [Change National Objective](#)

**Proposed Accomplishments**

*Accomplishment Type	*Proposed Count
10 - Housing Units <a href="#">Change Accomplishment Type</a>	5

**\*Performance Objective:** (tip)  
Create suitable living environments

**\*Performance Outcome:** (tip)  
Availability/accessibility

**Address**

Confidential (Suppress on Reports)

**\*Address Line 1:**  
346 W. Elm Street  
(ex: 1313 Sherman Street)

**Address Line 2:**  
Unit 2 - 5 Units

**Address Line 3:**

**\*City:**  
Concord

**\*State:**  
TX

**\*Zip Code:**  
77850 +

**Activity Purpose:**  
(Indicate all that apply)

**\*Help Prevent Homelessness?**  
 Yes  No

**\*Help the Homeless?**  
 Yes  No

**\*Help Those with HIV/AIDS?**  
 Yes  No

**\*Help Persons with Disabilities?**  
 Yes  No

**Associate to Another Activity**  
**Will accomplishments be reported at another activity?** (tip)  
 Yes  No

**IDIS Activity ID:**

---

**Organization carrying out activity**

**\*Is this activity being carried out by the grantee?**  
(Either directly and/or through contractors)  
 Yes  No

**Activity is Being Carried Out by the Grantee Through:** (tip)  
Grantee Employees and Contractors

**Name of Organization carrying out activity:** (tip)  
[Select Organization](#)

**Organization is Categorized as:** (tip)  
[Select Option](#)

---

**Target Area**

**Area Type:** (tip)  
[Select Option](#)

**Area Name:** (tip)  
[Select Option](#)  
[Add New Area](#)

---

**Special Characteristics**  
(Check all that apply to the location of this activity)

Presidentially Declared Major Disaster Area  
 Historic Preservation Area  
 Brownfield Redevelopment Area  
 Conversion from Non-Residential to Residential Use




자료: US HUD (May 2014), 『Basically CDBG』, Slides 289-291.



### 3-2. IDIS 세부성과(accomplishment detail) 설명서

<b>Grantee/PJ Activity ID:</b>	<b>Activity Name:</b> Rental Rehabilitation - 2010 -346 W Elm Street	<b>Program Year/IDIS Project ID:</b> 2009/7
<b>IDIS Activity ID:</b> 750	<b>Activity Owner:</b>	<b>Project Title:</b> MULTI UNIT REHABILITATION
<b>National Objective:</b> LMH		

Accomplishments for Program Year: 2009 **Select Another Year:**

2009 | Edit Selected Year

2010

2009

**Accomplishment Narrative:** (maximum 4000 characters)  
 CDBG funds in the amount of \$50,000 were used to rehabilitate these 3 out of 5 rental units, in the emergency rehabilitation program for program year 2009.

*Accomplishments	Proposed Units
Accomplishment Type	
10 - Housing Units	5

**\*Direct Benefit Data by Households**

Race/Ethnicity	Owner		Renter		Total Households	
	Total	Hispanic/Latino	Total	Hispanic/Latino	Total	Hispanic/Latino
White			2	1	2	1
Black/African American			1		1	0
<b>Totals</b>	3	0	3	1	3	1
<b>Female-Headed Households (tip)</b>			2		2	

[Add Another Race by Households](#)

**Income Levels (tip)**

	Owner	Renter	Total
Extremely Low		2	2
Low		1	1
Moderate			0
Non-Low/Moderate			0
<b>Totals</b>	0	3	3
<b>Percent Low/Mod</b>	0 %	100 %	100 %

**Rental Rehab**

**Total Rental Units: (tip)**  
3

**Of the Total Rental Units, Number of:**

	Number of Units
Affordable Units	3
Section 504 Accessible Units	1
Brought from Substandard to Standard Condition (HQS or Local Code)	3
Units Qualified as Energy Star	
Brought into Compliance with Lead Safety Rules (24 CFR Part 35)	3
Units Created Through Conversion of Non-Residential to Residential Buildings	

**Of the Total Affordable Units, Number of:**

	Number of Units
Units Occupied by Elderly	1
Years of Affordability Guaranteed	
Units Subsidized with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by Another Federal, State or Local Program	
Units Designated for Persons with HIV/AIDS Including Units Receiving Assistance for Operations	
Of Units Designated for Persons with HIV/AIDS, Number Specifically for Chronically Homeless	
Permanent Housing Units Designated for Homeless Persons and Families, Including Units Receiving Assistance for Operations	
Of Permanent Housing Units Designated for Homeless, Number for the Chronically Homeless	

자료: US HUD (May 2014), 『Basically CDBG』, Slides 295-2.

